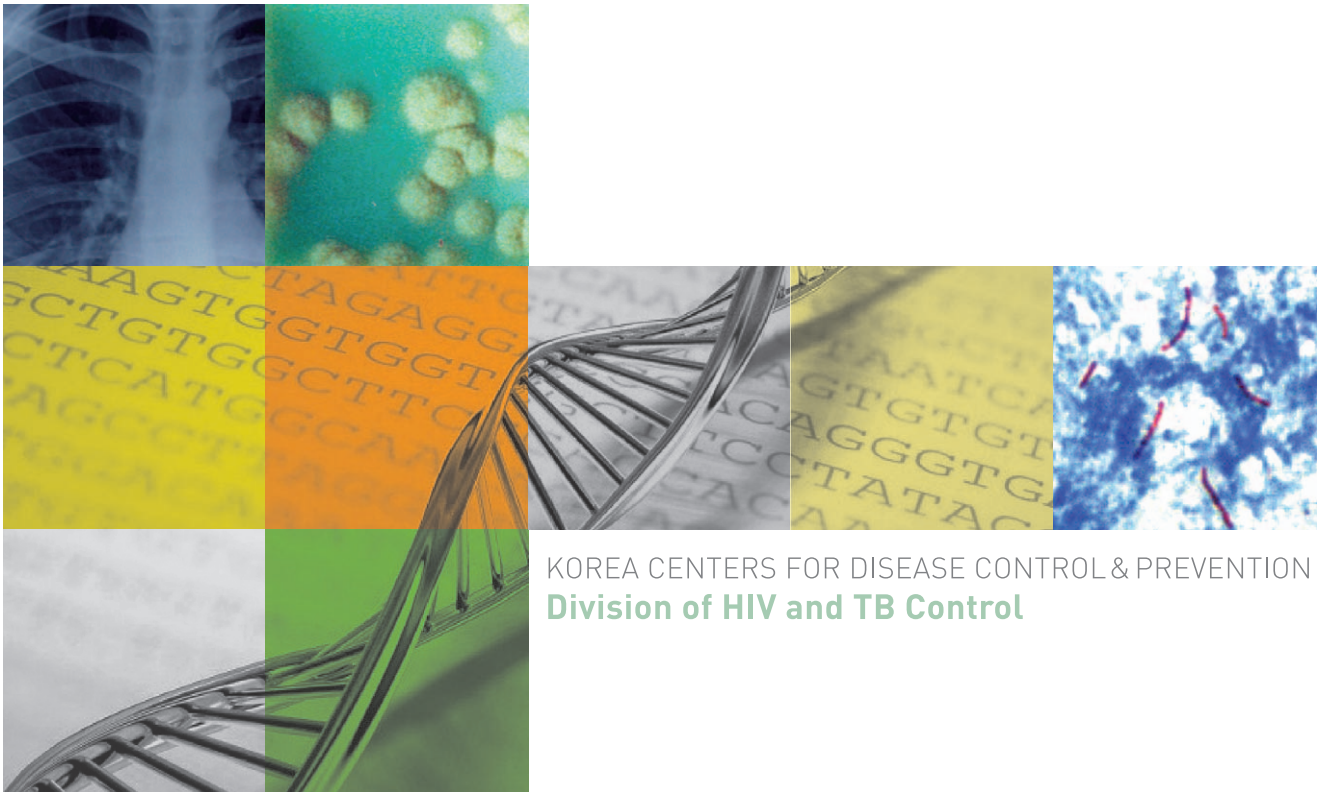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52159-000036-10

PHWR Vol 5-GL2012019

ISSN 2233-842X

# 2013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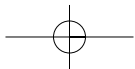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Division of HIV and TB Control**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표지

# 2013년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지침 II



## ○ 목 차

- 제1편\_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총괄 2
- 제2편\_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12
- 제3편\_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59
- 제4편\_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102
- 제5편\_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140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총괄

## ○ Contents

○ 1. 국가결핵관리사업 개요	3
● 가. 목적	3
● 나. 비전과 목표	3
● 다. 결핵관리사업 체계	4
○ 2.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개요	5
● 가. 배경 및 필요성	5
● 나. 사업 내용	7
● 다. 법적근거	8
○ 부록. 홍보 가이드라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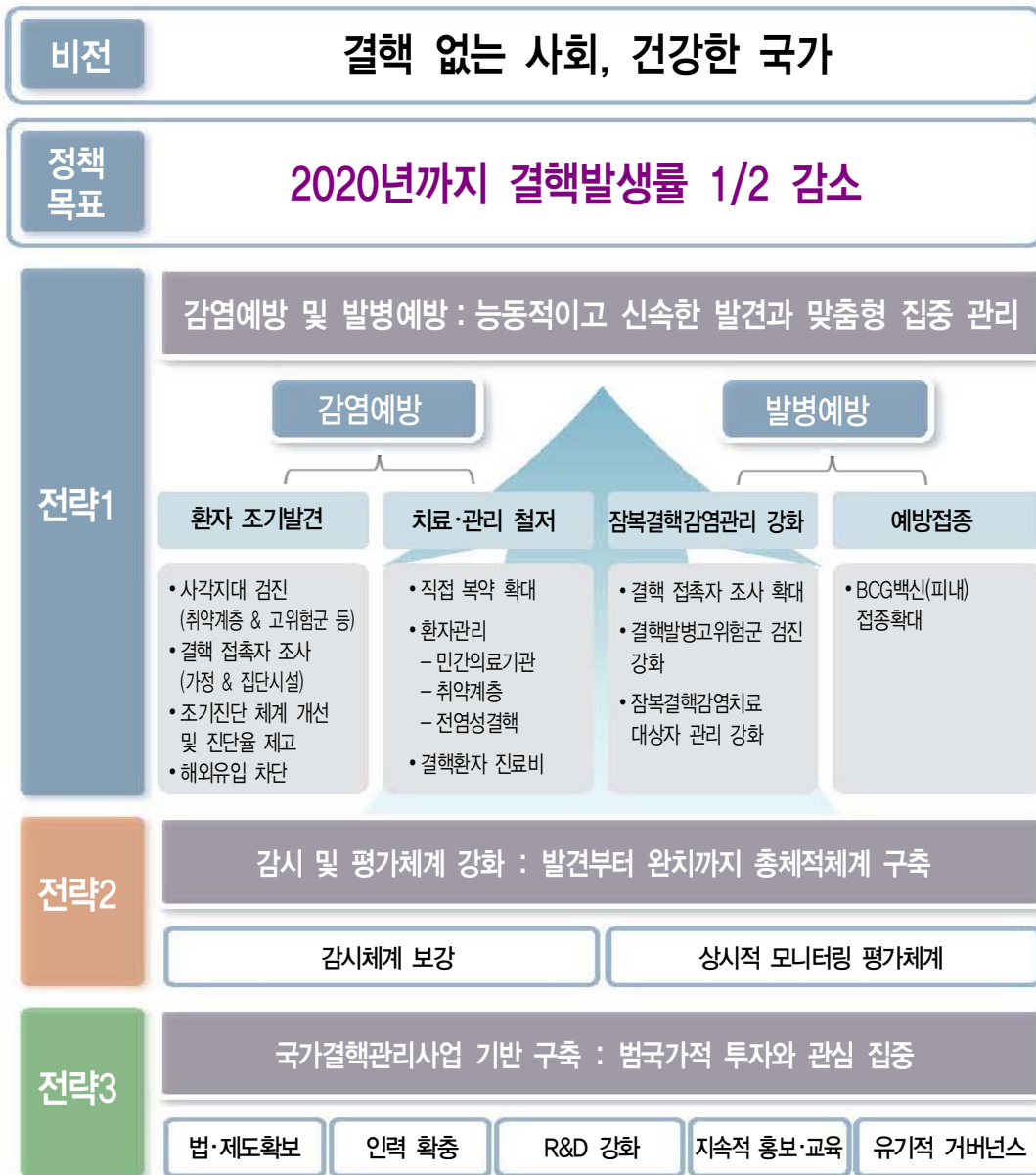


# 국가결핵관리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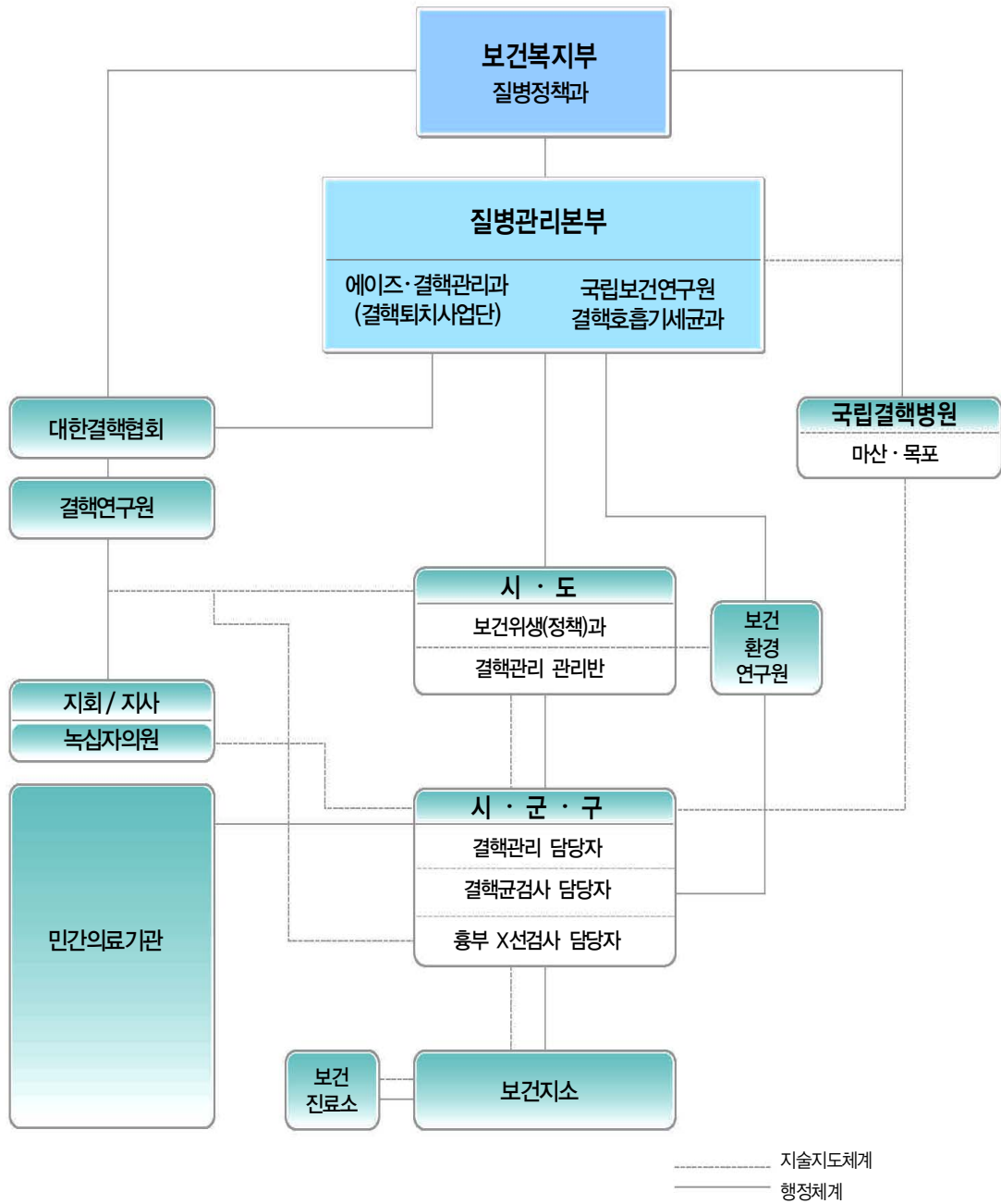
## 가. 목적

-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 나.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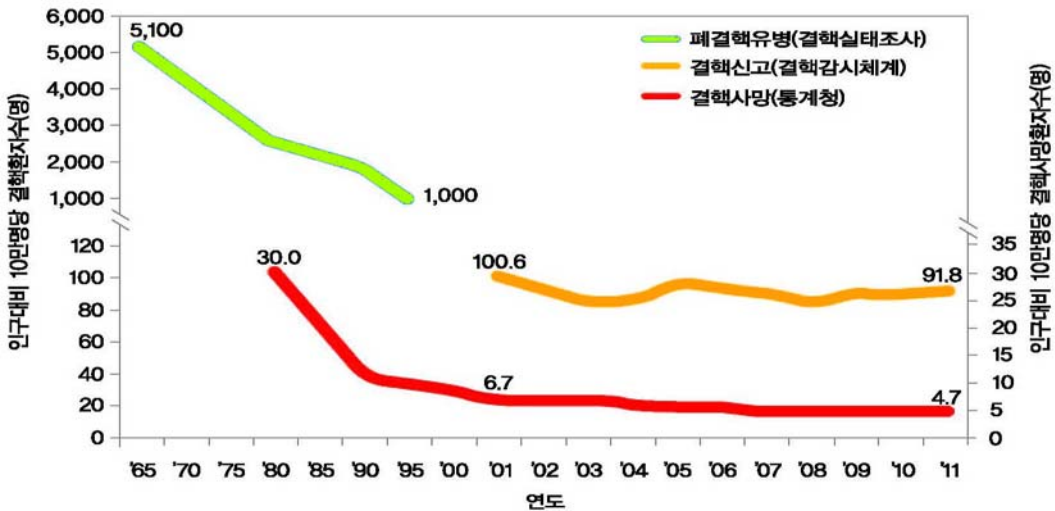
## 다. 결핵관리사업 체계



가.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결핵문제 및 증가(반전)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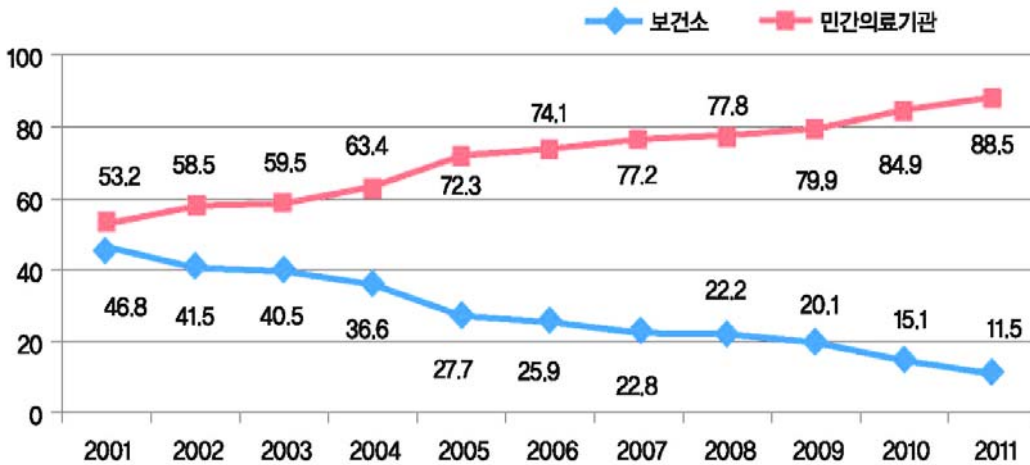
- 1962년부터 1995년까지는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결과 빠른 속도로 환자가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 속도 둔화 (1965년 1,240천명 → 2000년 259천명)



자료원 : 1. 제7차전국결핵실태조사결과, 보건복지부·대한결핵협회, 1995  
 2.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2012  
 3.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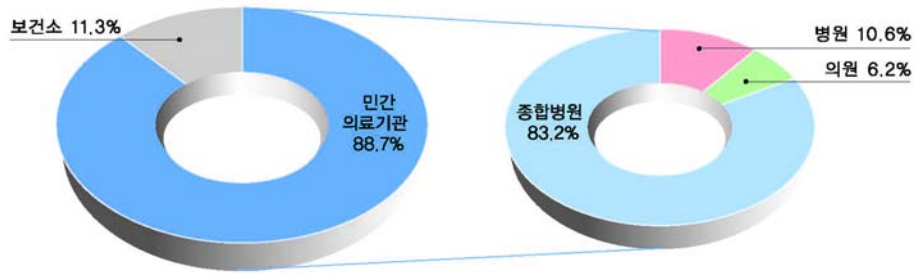
■ 결핵환자의 민간의료기관 선호도가 증가

-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인하여 결핵환자의 민간의료기관 선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자료원 :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2012

- 결핵 신고 신환자 중 민간의료기관 신고 비율이 '01년 53.9%에서 '11년 88.7%으로 증가



- 중소병원 및 의원 1개소당 결핵환자 평균 7명 발생,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지원하는 것은 비용효과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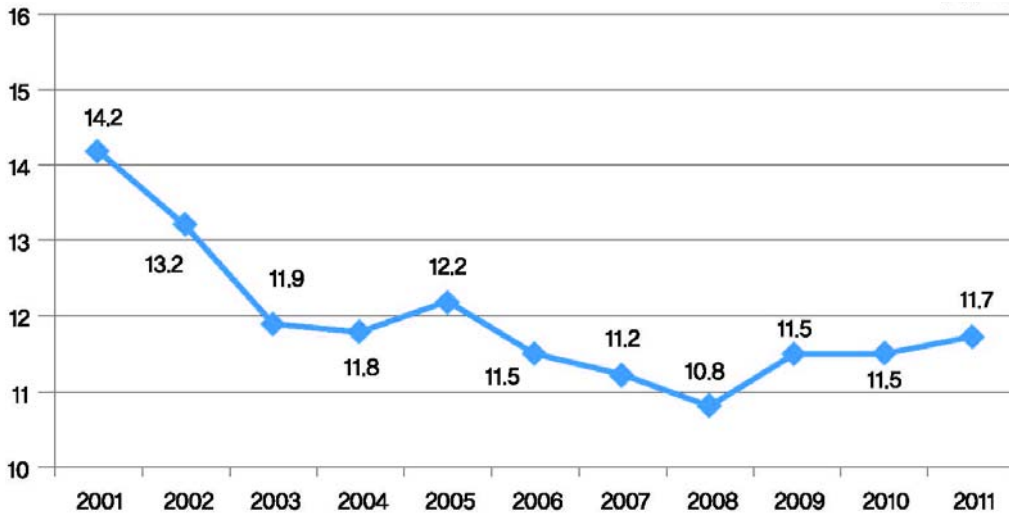
의료기관 수(개)	116	4,200
심평원청구건수(건)	41,962	29,836

자료원 : 1.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2012  
 2. '10 의료기관 심사평가원청구건수 71,798건(4,316개 의료기관)

## ■ 결핵재발환자 추이(2001년~2011년)

재발비율

(단위 : %)



자료원 :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2012

## ■ 다제내성 결핵환자 현황

-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신환 810명, 재발 1,000명으로 전체 1,800명 추정(Global TB WHO, 2011)
- MDR-TB 및 XDR-TB는 장기적 치료(약 18개월 이상) 및 약제비 부담 등으로 완치가 어렵고 호흡기를 통해 타인에게 확산될 우려가 큼(전염성 결핵환자 1명은 10~15명을 감염시킴)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대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결핵은 우리나라 감염병 중 환자 발생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아 감염과 발병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지원 필요
  - 결핵환자의 치료중단 주요인은 경제적 부담임
  - 결핵은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타인에게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 필요

## 나. 사업 내용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
  - 의료기관 결핵(호흡기)환자의 가족·동거인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지원
- **의료기관 결핵관리**
  - 결핵관리운영비지원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상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를 위한 운영비 지원
  - 결핵환자관리비지원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하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비(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 지원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 입원명령을 받은 전염성 결핵(다제내성 및 비순응)환자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결핵환자의료비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의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 다. 법적근거

-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투약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인(檢案)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결핵예방법 제9조(의료에 관한 지도)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가정 및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결핵예방법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법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결핵예방법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법 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 결핵예방법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 경비
  6. 제20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홍보 가이드라인

### 가. 홍보 메시지(안)

-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드리겠습니다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및 결핵담당자를 통하여 치료를 마칠 때까지 보건교육, 복약관리, 내원독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사회, 결핵 없는 나라! 결핵ZERO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결핵예방 수칙,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침 에티켓
  - ▶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 ▶ 2주 이상 기침 시 가족과 친구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 ▶ 2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결핵 검진은 필수!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 검진을 받으세요!**



기침에티켓, 하나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 필수!



기침에티켓, 둘  
2주 이상 기침 시  
마스크 착용!



결핵 검진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 검진은 필수!





- 결핵은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 ▶ 결핵은 호흡기 감염성 질환이므로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
  - ▶ 2~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핵검사는 필수!
  - ▶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는 필수!

**결핵은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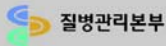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



결핵환자 마스크 착용

**결핵 예방 수칙**  
 결핵은 호흡기 감염성 질환이므로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  
 2~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핵검사는 필수!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는 필수!



## 나. 홍보 실행방법

### ■ 전국 시·도 및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제공 홍보물(교육DVD, 포스터, 리플릿, 수첩 등) 적극 활용
- 관할 의료기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핵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결핵예방의 날(3.24)」 전·후 결핵예방주간(또는 결핵검진주간) 선포 및 거리 캠페인
- 관공서 및 공공기관 건물 로비 PDP(TV 등) 활용한 결핵예방 메시지 홍보
-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결핵사업에 대한 내용 게재 및 팝업 홍보
- 지역 내 버스 LED 모니터 및 음성광고 활용 홍보
- 지역 기차역(KTX역 등) 로비 및 대형 스크린 등에 결핵영상 홍보
-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모니터 활용 홍보
- 지역신문을 통한 언론홍보(인터뷰, 기획기사 등 적극 활용)
- 지역 건물 옥상 등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그래픽 자막 홍보
- 지하철 역사 내 안내용 전광판 활용 자막 메시지 홍보
- 보건소 전화 '링고서비스'를 활용한 안내 홍보
- 해당 기관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
- 기타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및 현수막 부착, 게시
- ※ 건물 로비 등 포스터, 리플릿 비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http://www.cdc.go.kr)) 또는 대국민 결핵ZERO 홈페이지([www.tbzero.com](http://www.tbzero.com)), 결핵바로알기 홈페이지([tbfree.cdc.go.kr](http://tbfree.cdc.go.kr)) 등에서 결핵 관련 홍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

### ■ 의료기관

- 질병관리본부 제공 홍보물(교육형 DVD, 포스터, 리플릿, 수첩 등) 적극 활용
- 해당 기관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
- 의료기관 로비 PDP(TV 등) 활용한 안내 메시지 홍보
-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결핵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게재 및 팝업창 게시
- 유동인구가 많은 복도 등에 포스터 부착
- 결핵 관련 진료과(호흡기내과 등)에 리플릿 비치
- 지역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결핵예방 검진 캠페인

#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 ○ Contents

○ 주요변경사항	13
○ 1. 개요	14
○ 2. 사업추진체계	15
○ 3. 사업내용	17
● 가. 지원대상	17
● 나. 지원범위	17
● 다. 지원비용	18
● 라. 지원원칙 및 지급기준	21
○ 4. 사업추진방법	22
● 가. 사업시행 절차	22
● 나. 의료기관의 역할	23
● 다. 결핵환자접촉자검진 실시 기준	26
● 라. 쿠폰작성방법	31
○ 부록. 1. 관련서식	37
○ 2. 관련Q&A	54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2년	2013년	
내 용	검진비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기준</li> <li>–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기준</li> <li>–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참고 p18)</li> </ul>
	PPD시약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상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무상배포</li> </ul>
	추가검진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검사대상자</li> <li>– 1차검사결과 흉부 X선은 정상 또는 타질환 이고 TST 음성인 대상자 중 만 18세미만이거나 결핵 고위험군<sup>1)</sup>인 경우(IGRA 검사 미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0주 추가검사대상자</li> <li>– 만 18세이하 또는 결핵 고위험군<sup>1)</sup>인 자가 처음 검사결과 흉부 X선 정상(타질환), 이면서 TST 음성인 경우(IGRA 검사 미시행)</li> </ul>

1) 결핵고위험군 : 장기간스테로이드사용자(예정자),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규폐증, HIV(+),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자, TNF 길항제 사용자



## 개요

### 가. 사업 목적

-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

### 나. 사업 목표

- 결핵 진료 및 신고하는 의료기관의 접촉자검진사업 100% 참여
-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100%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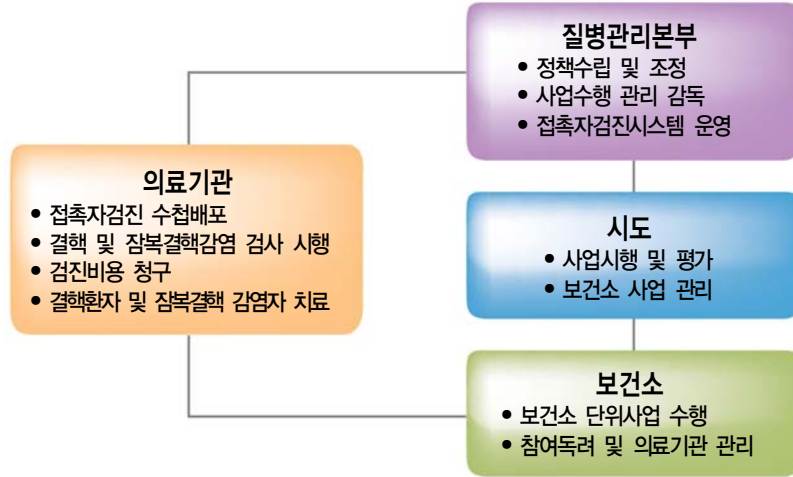
### 다. 추진전략

공공	▶	접촉자 조사를 위한 체계 및 인프라 구축(예산 및 행정지원 등)
민간	▶	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실시(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

### 라. 추진경과

2008.3.19	결핵퇴치 2030 Revision 수립 - 접촉자 조사관리 강화 및 접촉자조사·잠복결핵감염 치료의 효과적 수행, 감시
2010.1.1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을 개정 -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건강진단 등의 조치
2010.1.25	결핵예방법 전면개정 -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관리
2011.4~5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시범사업 시행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의료기관 대상 - 전염성 호흡기결핵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흉부 X선) 및 잠복결핵감염(TST, IGRA) 검사지원
2011.6~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전면 시행
2011.9~	결핵검진에서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추가지원
2011.11~	전염성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에서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로 지원대상 확대
2012.2~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 추가 지원

가. 사업수행체계도



나.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본부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및 기술지원
- 지자체별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접촉자검진사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도

- 시·군·구 보건소 사업 관리 및 보고
  - 시·군·구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예산 집행 결과 보고 포함)
- 시·군·구 보건소 모니터링 및 평가
  - 접촉자검진수첩 및 PPD시약 관리 모니터링
  - 사업실적 평가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홍보 및 보건소 담당자 교육
- 예산확보 및 집행

## ●● 시·군·구

- 사업 등록 및 관리
  - 참여의료기관 등록 및 관리
  - 접촉자검진내역 등록 및 관리
  - 관할 의료기관의 접촉자검진수첩 및 PPD시약 (등록)관리
- 관할 의료기관에 접촉자검진수첩 배포 및 PPD시약 구입·배포
- 해당 의료기관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급
-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예산 집행 결과 보고 포함)
- 예산확보 및 집행

## ●● 의료기관

- 의료기관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에게 접촉자검진수첩 배포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시행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용 청구
- 무상배정 받은 PPD시약 관리 및 사용현황 보고



## 사업내용

### 가.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 진단코드 A15.00~16.91, A19.1~A19.9, U88.0, U88.1
  - 단, 소아(96개월 미만)결핵환자의 경우 호흡기결핵 여부와 상관없이(폐외결핵 포함) 모든 소아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 예) 68개월 소아결핵환자가 폐외결핵으로 진단받아 치료중인 경우 소아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접촉자검진 지원가능

####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 하루 8시간 이상·1주일 5일이상·최근 3개월 이상 매주 거주지를 방문한 자

- 지원제외대상
  -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 직장동료, 간병인, 친구 등 같이 거주하는 사례가 아닌 경우
  - 학교, 근로산업체 등 집단 및 수용시설 등에서 호흡기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하여 접촉자조사 실시

### 나. 지원범위

#### ●● 결핵검진

- 흉부 X선검사
- 객담도말 검사 : 항산균검경, 항산성 집균도말, 항산성 형광염색 집균도말
- 객담배양 검사 : 항산성 고체배양, 항산성 액체배양
-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는 흉부 X선검사결과 결핵의심자에 한함

#### ●● 잠복결핵감염검진

- TST : Tuberculin Skin Test(투베르쿨린 검사)
- IGRA 검사 :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인터페론감마분비 검사)
- ※ 주의사항 : 흉부 X선검사는 쿠폰을 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이 되어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권장연령에 맞춰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

## 다. 지원비용

●●● 검진비 수가(2013.2.1~2014.1.31)

(단위 : 원)

항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	만6세이상	17,300	15,700	14,100	13,200
	만6세미만	17,900	16,300	14,800	13,900
흉부 X선	만8세이상	7,700	7,400	7,100	6,500
	만8세미만	8,500	8,200	7,900	7,100
결핵피부반응(TST)		1,900	1,800	1,800	1,800
인터페론(IGRA)		102,100	98,100	94,200	90,000
항산균검경		1,800	1,700	1,600	1,600
항산성집균도말		4,400	4,300	4,100	4,1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700	6,400	6,200	6,100
객담배양_고체		16,900	16,300	15,600	15,600
객담배양_액체		16,900	16,300	15,600	15,600

※ PPD 시약은 의료기관 관할보건소에서 무상 배정

\* 진찰료

- ① 검사처방 시 발생하는 진찰료(처방비)
- ② TST(결핵피부반응검사) 결과 판독시 발생하는 진찰료(판독비)
- ③ 흉부 X선검사, IGRA(결핵균특이항원자극인터페론)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진찰료

●● <참고자료> 2013년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 검진수가 계산

(단위 : 원)

연령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만8세이상	흉부 X선	25,000	23,100	21,200	19,700
	흉부 X선, IGRA	127,100	121,200	115,400	109,700
	흉부 X선, TST 시행	26,900	24,900	23,000	21,500
	흉부 X선, TST 시행, IGRA	129,000	123,000	117,200	111,500
	TST 시행	19,200	17,500	15,900	15,000
	TST 판독	17,300	15,700	14,100	13,200
	TST 판독, IGRA	119,400	113,800	108,300	103,200
만6세이상~만8세미만	흉부 X선	25,800	23,900	22,000	20,300
	흉부 X선, IGRA	127,900	122,000	116,200	110,300
	흉부 X선, TST 시행	27,700	25,700	23,800	22,100
	흉부 X선, TST 시행, IGRA	129,800	123,800	118,000	112,100
	TST 시행	19,200	17,500	15,900	15,000
	TST 판독	17,300	15,700	14,100	13,200
	TST 판독, IGRA	119,400	113,800	108,300	103,200
만5세이상~만6세미만	흉부 X선	26,400	24,500	22,700	21,000
	흉부 X선, IGRA	128,500	122,600	116,900	111,000
	흉부 X선, TST 시행	28,300	26,300	24,500	22,800
	흉부 X선, TST 시행, IGRA	130,400	124,400	118,700	112,800
	TST 시행	19,800	18,100	16,600	15,700
	TST 판독	17,900	16,300	14,800	13,900
	TST 판독, IGRA	120,000	114,400	109,000	103,900
만5세미만	흉부 X선	26,400	24,500	22,700	21,000
	흉부 X선, TST 시행	28,300	26,300	24,500	22,800
	TST 시행	19,800	18,100	16,600	15,700
	TST 판독	17,900	16,300	14,800	13,900

※ 최종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생된 진찰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검진비 지원 예시

- 예시 1) 만 20세 성인, 종합병원 방문
  - 2013년 3월 5일 : 검사처방(흉부 X선, TST, IGRA)  
검사시행(흉부 X선, TST, IGRA)  
흉부 X선검사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3월 8일 : TST 판독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3월 10일 : IGRA 검사 결과 나눔
  - 2013년 3월 15일 : IGRA 검사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검사비 : 7,400원(흉부 X선)+1,800원(TST)+98,100원(IGRA)
    - 진찰료 : 15,700원(처방비)+15,700원(TST 판독비)+15,700원(IGRA결과확인 진찰료)
      - ※ 3월 5일 검사처방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3월 8일 TST 판독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3월 15일 IGRA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만일 IGRA 검사 결과는 나왔으나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음
- 예시 1) 만 7세 소아, 상급종합병원 방문
  - 2013년 4월 1일 : 검사처방(흉부 X선, TST)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4월 2일 : 흉부 X선, TST 시행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4월 4일 : TST 판독함, 흉부 X선 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검사비 : 8,500원(흉부 X선)+1,900원(TST)
    - 진찰료 : 17,300원(처방비) + 17,300원(판독비)
      - ※ 4월 1일 검사처방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4월 4일 흉부 X선, TST 판독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4월 1일에 검사 처방을 하고 4월 2일에 검사만 시행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지만 진찰료는 발생하지 않음

## 라. 지원원칙 및 지급기준

### ●● 지원원칙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되어 치료받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 ※ 사전에 접촉자검사쿠폰을 이용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재발환자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음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사사업에서 인정한 검사일정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 (라. 결핵접촉자 검진실시 기준 참고)
- TST 실시 후 48~72시간 이내 판독 한 경우
  - ※ TST 판독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검사비는 지원 가능
    - 흉부 X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임신부 및 당일 해당 병원에서 다른 진료로 흉부 X선검사한 경우 잠복결핵 감염검진만 시행하여도 지원가능
  - ※ 지원 시 다른 진료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함
- 흉부 X선검사결과 결핵의심인 경우만 객담검사 지원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는 동시에 최대 3개까지 지원가능. 단, 처방시 발생하는 진찰료는 1회만 지원
  - ※ 흉부 X선검사 처방일(판독일)과 객담검사 처방일이 동일한 경우 진찰료 1회 지원

### ●● 지급제외 기준

- 본 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없음
- IGRA 검사비 지원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음

- ❖ 5세미만 : 비용청구 불가능
- ❖ 5~18세 : 고위험군<sup>1)</sup> BCG예방접종을 1세(12개월)이후 또는 2회접종한 경우 시행
- ❖ 13~18세 : TST검사결과 양성 확인 후 시행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대한 처방을 하였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진찰료(처방비)를 청구할 수 없음



## 사업추진방법

### 가. 사업시행절차

#### 결핵관리운영비 지원 제외 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결핵환자에게 ‘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에 대한 안내 및 가족·동거인 수 만큼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호흡기 결핵환자에 한하여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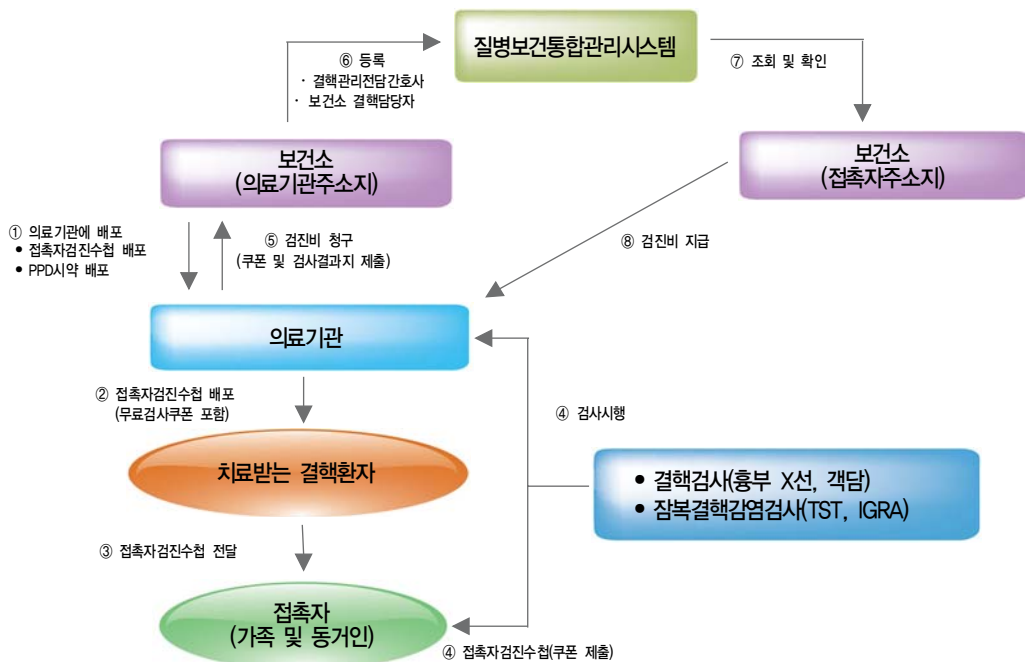
접촉자(가족 등)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기 위해 수첩 수령 후 1주일 이내 발급 받은 무료검사 쿠폰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

의료기관은 검사를 시행하고 검진비 대신 무료쿠폰을 접수

의료기관은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와 무료검사쿠폰을 관할 보건소로 청구(1주일 이내)  
 ※ 객담배양검사는 검사실시여부만 표시하고 결과지는 검사결과 판정 후 제출

보건소 결핵담당자(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접수된 쿠폰을 1주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

접촉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는 시스템 조회 확인 후 15~30일 이내 검진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



## 나. 의료기관의 역할

- 사업참여를 원하는 경우 '참여확인서'(서식 1)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 호흡기 결핵환자(A15.00~A16.91, A19.1~A19.9, U88.0, U88.1)로 치료중인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의 수를 문의하여 해당 수 만큼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
  - ※ 단, 소아(96개월미만)결핵환자의 경우 호흡기 여부와 상관없이(폐외결핵 포함) 소아결핵환자로 치료중인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지원
- 검사시행 후 접촉자검진비 관할 보건소로 청구(쿠폰 및 검사결과지 포함)
  - 주기적으로 접촉자의 무료검사 쿠폰 및 검사결과지를 관할 보건소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 무상으로 배정받은 PPD시약 사용현황을 매월 관할보건소에 송부

### ●● 결핵환자의 신고 및 교육

- 결핵환자 진단 시 지체 없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
- 호흡기결핵환자의 접촉자검진비 국가지원 사항 안내
- 발급받은 접촉자검진수첩으로 1주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및 관리

####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 발급대상 : 호흡기결핵환자로 치료중인 자(p17 가.지원대상 참고)

※ 단, 소아(96개월미만)결핵환자의 경우 진단코드와 상관없이(폐외결핵포함) 소아결핵환자로 치료중인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지원

- ※ 제외 : 전입하여 사전에 무료검사쿠폰으로 검진을 실시한 경우
- 발급시기 : 결핵을 진단받은 후 즉시 발급
  - 환자 가족 및 동거인 수 만큼 진료 의료기관에서 발급

#### ■ 접촉자검진수첩 관리

-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촉자검진수첩을 배포 받을 때 인수증(서식 2)을 작성
  - 추가 수첩배포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요청
- ※ 폐업 또는 사업참여를 중단할 경우 남은 접촉자검진수첩은 해당보건소로 반납
- 대상자에게만 발급하여야 하며, 만일 관리 소홀로 분실한 경우 분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보건소에 분실사유서(서식 3)를 제출
- 발급받은 수첩을 환자 또는 접촉자가 분실하였을 경우 전국 보건소에서 쿠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PPD시약 관리

- 보건소에 PPD시약 수요량을 제출하고 배정 받을 때 기존에 제출한 수요량이 일치한지 확인
  - 추가 PPD시약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요청
- 배정 받은 PPD시약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대상자에게만 사용
- 매월 5일 전달에 사용한 PPD시약 사용현황을 제출(서식 4)
- 만일 관리 소홀로 분실한 경우 분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보건소에 분실사유서(서식 3)를 제출
  - ※ 폐업 또는 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 남은 PPD시약을 해당보건소에 반납

### PPD시약 보관 및 사용시 주의사항

- 2~8°C 온도에서 보관
- 온도가 자주 변하는 냉장고 문쪽에는 보관하지 않음
- PPD 시약의 Batch No.와 유효기간을 확인
- 시약을 개봉한 시간을 바이알에 적고, 24시간이 지나면 폐기
- BCG 백신과 다른 곳에 보관

## ●● 검사 실시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결핵 : 흉부 X선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대상 : 흉부 X선검사결과 결핵의심 판정자
- 잠복결핵감염 : TST, IGRA
  - ※ 주의사항 : 흉부 X선검사는 쿠폰을 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이 되어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권장연령에 맞춰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8~10주 추가검사(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
  - 만 18세이하 또는 결핵 고위험군<sup>1)</sup>인 자가 처음 검사결과 흉부 X선 정상(타질환),이면서 TST 음성인 경우 (IGRA 검사 미시행)

## ●● 추서관리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경우 본인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여 치료
  - 잠복결핵감염치료는 고위험군<sup>1)</sup>이 아닌 경우는 35세미만으로 한정

- ※ 치료를 하지 않는 잠복결핵감염자에게서 결핵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보건 교육 실시

## ●● 비용 청구

### ■ 청구방법

- 접촉자의 검사결과가 나오면 검사쿠폰을 작성하신 후, 검사결과지 및 검사쿠폰을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쿠폰 검사 판독일에 자비 체크
  - ※ 접촉자검사결과지 : 흉부 X선검사결과지(판독지), IGRA 검사결과지,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결과지

### ■ 비용지급기한 및 절차

- 처방일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여 접촉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접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처방일 당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최종 주민등록상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TST 판독의 경우 TST 처방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기한 : 의료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15~30일 이내 지급

## ●● 청구 및 지급내역현황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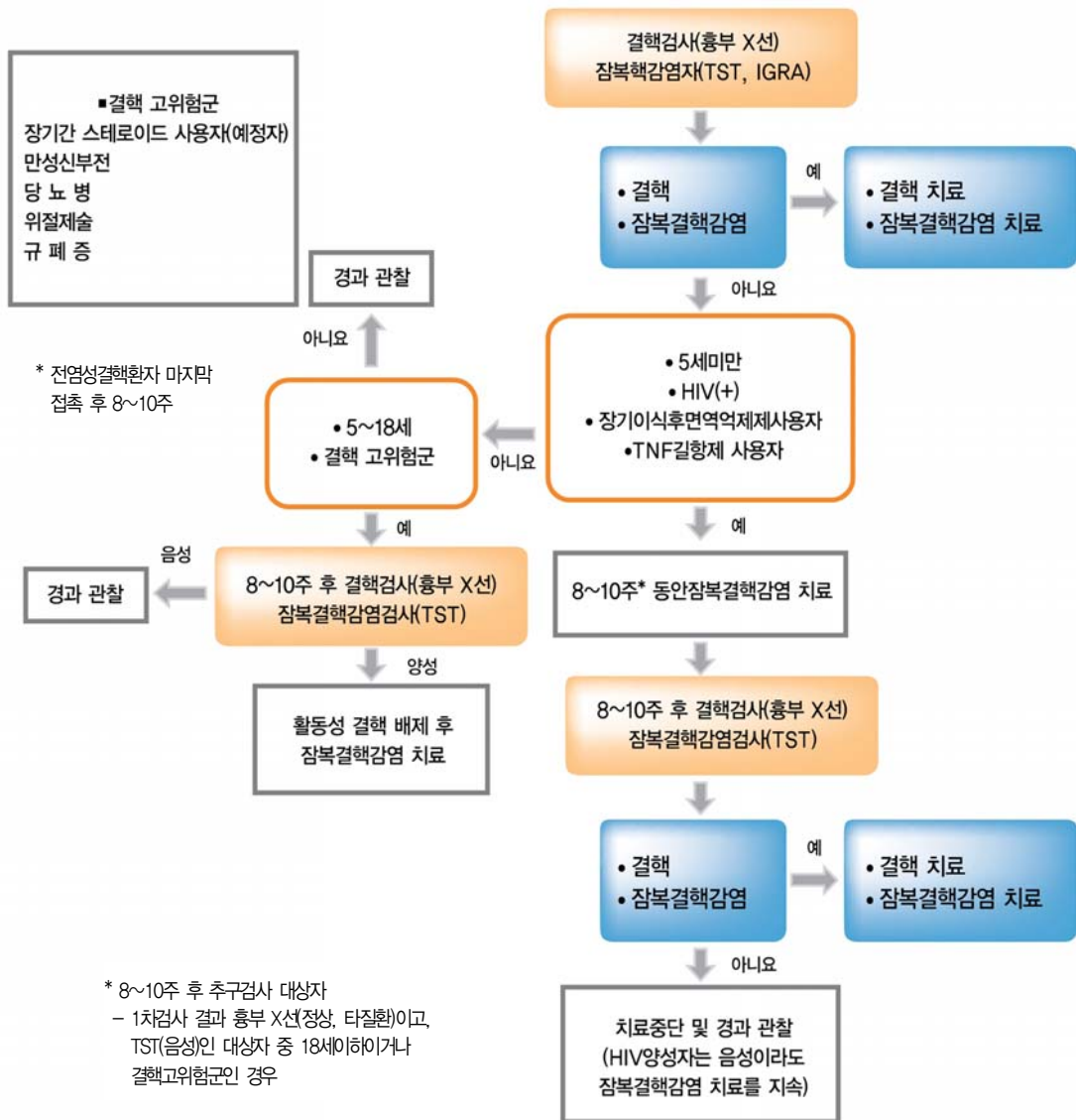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촉자검진사업-검사비관리'를 통해서 확인가능
  - 홈페이지 관리자를 통한 개별 가입 및 로그인
  - 가입시 권한 : 의료기관 접촉자검진비조회
- 보건소에서 검진비 입금시 가능한 아래와 같은 문구로 입금함
  - 결핵(주소지 시·군·구 보건소명)문구로 입금

예시) 서울△△구보건소에서 ○○○ 의료기관에 5건에 대하여 240,000원 입금시 입금자 명에 결핵(△△구보건소)으로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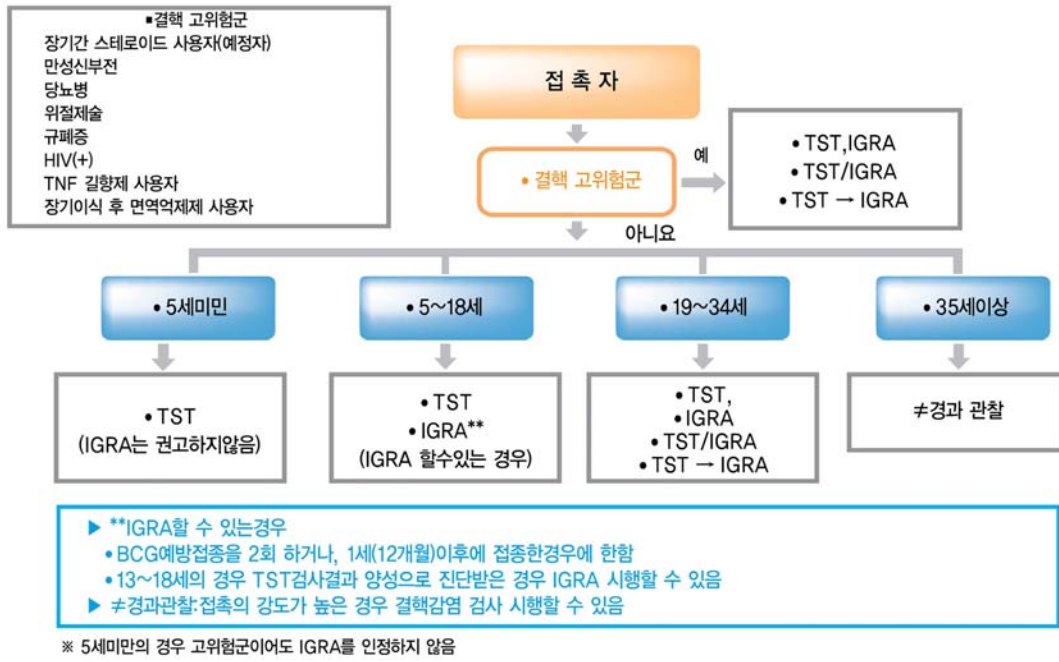
## 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실시 기준

- 2011년 결핵진료지침(IX. 환자관리 2. 접촉자 검진)에 근거하여 실시  
※ IGRA 검사는 처음 1번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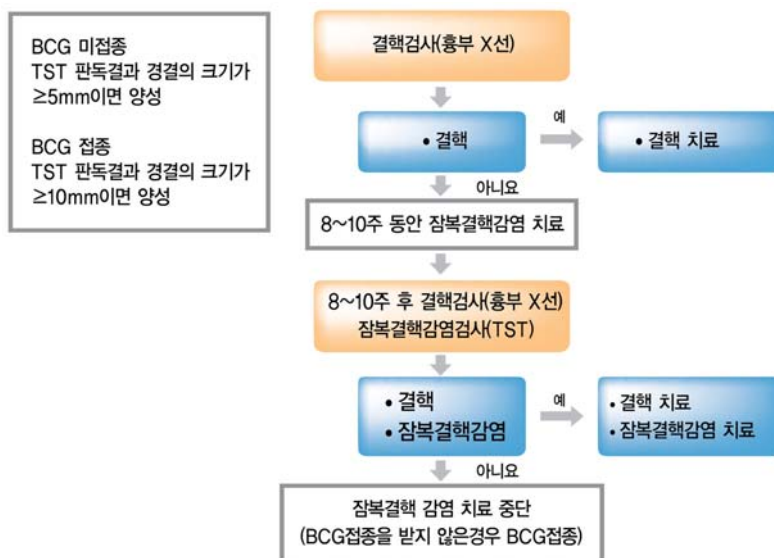
###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접촉자 검진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접촉자검진에서 잠복결핵감염검사의 적응증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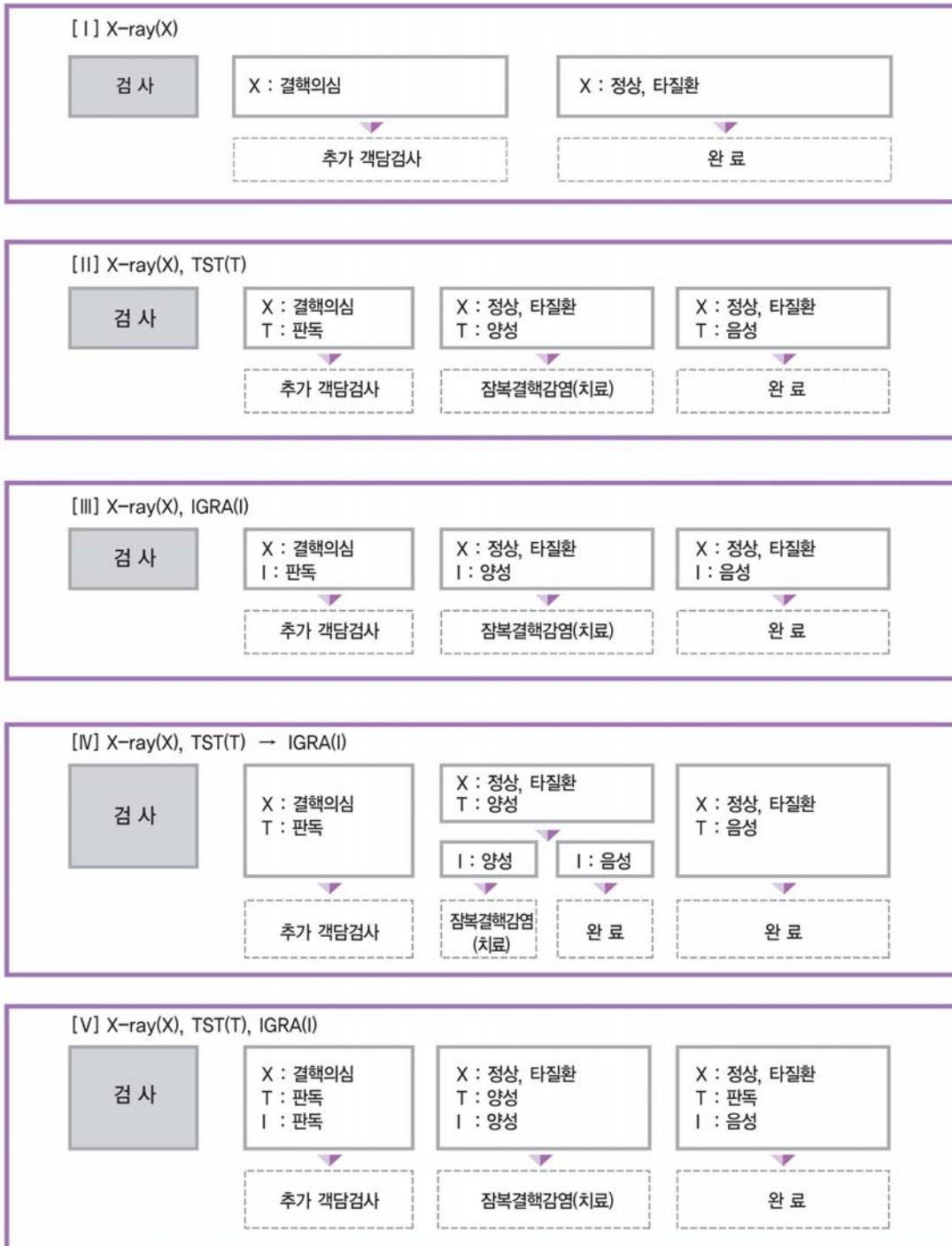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접촉자 검진 : 신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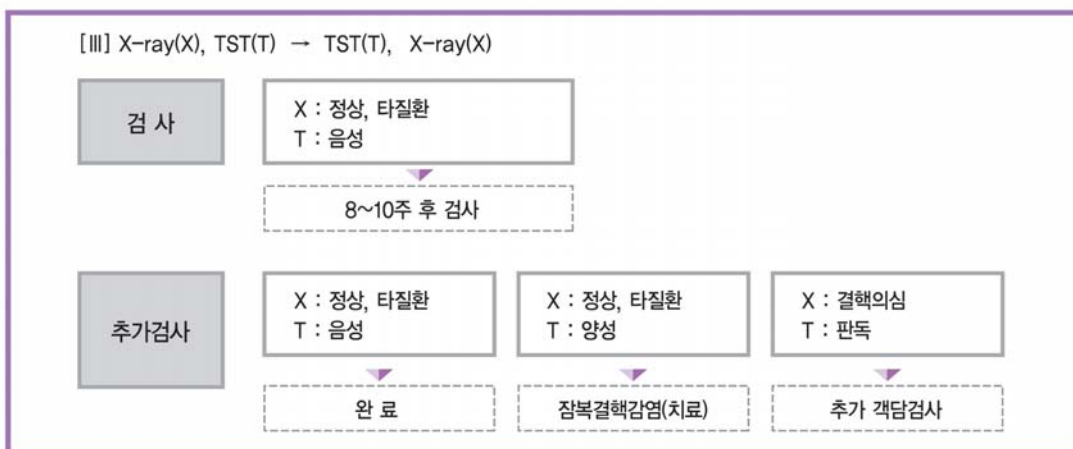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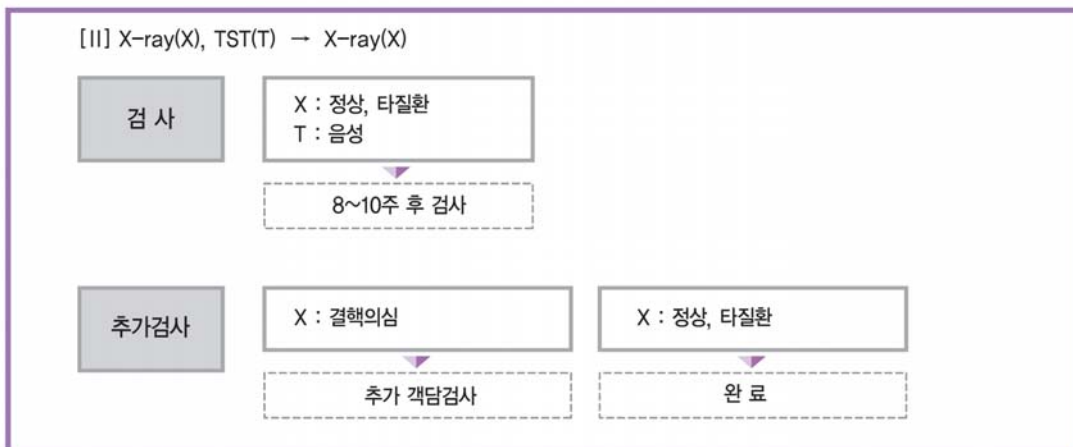


10 문용 의사관리대학병원 감염내과 김민  
20 문용 의사관리대학병원 감염내과 김민  
30 결핵관리과 김민 (문의) 문용 의사관리대학병원 감염내과 김민  
40 문용 의사관리대학병원 감염내과 김민  
50 결핵관리과 김민 (문의) 문용 의사관리대학병원 감염내과 김민

## ■ 1차 검사



## ■ 1차검사 후 8~10주 후 추가검사



## ■ 흉부 X선검사

- 결과 : 정상, 결핵의심, 타질환

## ■ 투베르쿨린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 주사 방법 : 주로 사용하지 않는 팔의 팔꿈치 5~10cm 아래의 전박 내측부위에 PPD 시약(RT-23 2TU) 0.1ml를 피내 주사
  - ※ 피내에 0.1ml PPD 시약을 정확히 주사하면, 직경 6~10mm의 팽진(wheal)이 생김
- 판독 방법
  - 피내주사 48~72시간 후에 형성되는 지연형 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경결을 측정하는 것임
  - 팔의 긴축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경결의 가장 긴 직경을 mm 단위로 측정
    - ※ 홍반(발적)은 측정의 대상이 아니며, 경결이 없는 홍반은 0mm로 기록함
- 판독 결과
  - 투베르쿨린 검사 양성(positive)
    - 1차 검사에서 10mm 이상인 경우
    - BCG를 접종하지 않은 신생아에서 5mm 이상인 경우
  - 투베르쿨린 검사 양전(positive conversion) : 8~10주 이후에 실시한 2차 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을 경우, 양전으로 판정하며 이는 최근감염을 의미함
    - 5세 미만, 면역저하자 : 1차 결과보다 6mm이상 증가한 모든 경우 (3mm → 9mm)
    - 5세 이상, 정상면역자 : 10mm이상이면서 1차 결과보다 6mm이상 증가한 경우 (6mm → 12mm)

##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방법 : 혈액 검사
  - ※ 결핵균에 대한 인체의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결핵균에 감염된 림프구들은 세포매개 면역 반응을 통해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능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결핵균 특이 항원을 사용하여 수치 측정
- 결과
  - 양성
    - Quantiferon-TB Gold In-tube : 0.35 IU이상
    - T-SPOT.TB : Spot 수 10개 이상

##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결과 : 양성-결핵

## 라. 쿠폰작성방법

###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쿠폰(1차검사)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쿠폰(1차검사)>\_앞

□□□□-□□□□-□□□□

①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쿠폰(1차검사)

수신 : _____		보급수원 : _____	
<b>환자정보</b>			
성명	가족동거인 수 : _____ 명		
주인등록번호			
<b>접촉자정보</b> (환자와의 관계 : _____ )			
성명	주인등록번호		
연락처	TEL : _____ H-P : _____	개인정보 동의여부	□예 □아니오
주인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과거력여부	과거결핵치료 □유 □무	과거잠복결핵감염치료	□유 □무
기저질환여부	□규폐증 □위-장출처 등 □HIV □스타티노이드복용	□알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알콜중독 □면역억제제복용(TNF-α)	□일상부 □기타
BCG 접종여부	□유 □무	□1회 접종 □2회 접종	□유 □무
	□경피 □1세이후 접종	□오목	SMS 동의여부 □예 □아니오
<b>검사내역 : 흉부X-선, TST, (IGRA)는 동일한 날에 처방되어야 함</b>			
	처방일	검사일	판독일 (의) 검사원서(의) 검사원서
□흉부X-선	□정상 □결핵의심 □타질환	///	///
□TST	□양성 □음성 결과 : mm	///	///
□IGRA	□Quantiferon TB-Gold In Tube □양성 □음성 □판독불능	///	///
	□T-Spot □양성 □음성 □판독불능	///	///
결과	□정상 □결핵의심 □잠복결핵감염 □타질환 □8~10주 후 추가검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여부	□치료안함 □치료시 처방 ○10월 ○15월 ○15R3월 ○R4월 ○기타		
※ 치료 및 타진료, 추가검사료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의료기관</b>			
	대상급증합병권 □중합병권 □병권 □의원		
	의료기관명 : _____	전화번호 : _____	
	요양기관번호 : _____	진료과 : _____	
	진료의사성명 : _____	면허번호 : _____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면, 팩스

- 수첩표지에 작성된 일련번호 접촉자 작성
- 의료기관 작성
- 접촉자 작성
- 처방일 및 판독일 포함하여 최대 진찰료가 3회 지원됨
- ② 쿠폰 사용일을 TST 판독일에 작성
- ③ 쿠폰 사용일을 흉부X-선 판독일 또는 IGRA 결과확인일 작성
- 흉부X-선 당일 판독한 경우 흉부X-선 검사일과 동일하게 작성
- 의료기관 작성

- 접촉자검진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처음 사용
  - 기저질환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 체크, 임신부의 경우 반드시 체크
  - 결핵의심과 잠복결핵감염 결과 시 결핵의심으로 결과 체크
  - 흉부 X선, TST, (IGRA)는 동일한 날에 처방하고, 만일 TST양성으로 IGRA를 처방한 경우 TST판독일과 IGRA 처방일이 동일하여야 함
  - 치료 및 타진료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하여 접촉자가 부담한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고 해당 사업에서 진찰료가 지원되지 않음
  - 진료과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 (예 :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1차검사)\_뒤

**②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TST판독, 정밀IGRA검사시행)**

접촉자정보		빈문일 :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사결과 및 검사내역 : TST판독, IGRA 검사는 동일한 날 처방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첩 :    mm		
<input type="checkbox"/> IGRA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시행 : TST검사결과 양성10m이상인 경우 시행		
* 흉부X선, IGRA검사만 시행한 경우 <b>㉠</b> 번을 사용하지 마시고 <b>㉡</b>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mall>※ 동 검사와 관련된 결과는 <b>㉠</b>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감염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small>			

▪ 접촉자 작성

---

✂

▪ 분리하여 사용

**③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최종)**

접촉자정보		빈문일 :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흉부X선, TST, IGRA검사처방일 및 TST판독일에 최종검사결과 판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최종 판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제출			
<small>※ 동 결과는 <b>㉠</b>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감염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차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small>			

▪ 접촉자 작성

- 1차검사 후 결과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
  - ②, ③ 쿠폰을 분리하여 사용함
  - ②, ③ 쿠폰은 무료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제출 또는 보관하지 않아도 됨
  - TST를 시행하여 TST판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② 쿠폰을 제출
  - 1차검사에서 흉부 X선, TST를 시행하여 TST 양성인 경우 IGRA검사 시행
  - 흉부 X선 또는 IGRA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③ 쿠폰을 제출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_앞

--

④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

수신 :  보건소장

접촉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중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검사내역 : 흉부X-선, TST는 동일한 날에 처방되어야 함		처방일	검사일	판독일 (●, ● 구문사용)
<input type="checkbox"/> 흉부X-선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	//	// <input type="checkbox"/> 자비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결과 : mm	//	//	// <input type="checkbox"/> 자비
결과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잠복결핵감염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잠복결핵감염 치료여부 <input type="checkbox"/> 치료안함 <input type="checkbox"/> 치료시 처방 <input type="radio"/> 1개월 <input type="radio"/> 3개월 <input type="radio"/> 6개월 <input type="radio"/> 9개월 <input type="radio"/> 기타				
※ 치료 및 타진료, 추가검사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의원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진료과		면허번호
진료의사성명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수첩표지에 작성된 일련번호  
접촉자 작성
- 의료기관 작성
- 접촉자 작성
- 처방일 및 판독일 포함하여  
최대 진찰료가 3회 지원됨
- ④쿠폰 사용일을 TST 판독일에 작성
- ⑤쿠폰 사용일을 흉부X-선 판독일에  
작성  
- 흉부X-선 당일 판독한 경우  
흉부X-선 검사일과 동일하게 작성
- 의료기관 작성

- 접촉자가 8~10주 추가검사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
  - 8~10주 추가검사 대상자 : 만18세이하 또는 고위험군이 흉부 X선 검사결과 정상(타질환)이면서 TST 음성인 경우(IGRA 검사 미시행)
  - 결핵의심과 잠복결핵감염 결과 시 결핵의심으로 결과 체크
  - 흉부 X선, TST는 동일한 날에 처방
  - 치료 및 타진료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하여 접촉자가 부담한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고 해당 사업에서 진찰료가 지원되지 않음
  - 진료과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 (예 :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_뒤

**5 추가검사결과 판독 쿠폰(TST판독)**

빈문일 :    년    월    일			
접속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연락처	TEL : H-P :		
<b>검사결과 및 검사내역</b>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결 :    mm	

※ 동 검사와 관련된 결과는 ●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쿠폰은 관찰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감염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접속자 작성



▪ 분리하여 사용

**6 추가검사결과 판독 쿠폰(최종)**

빈문일 :    년    월    일			
접속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연락처	TEL : H-P :		
<b>검사결과 및 검사내역</b>			
*흉부X선, TST, IGRA검사치반일 및 TST판독일에 최종검사결과 판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최종 판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제출			

※ 동 결과는 ●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쿠폰은 관찰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감염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접속자 작성

- 추가검사 후 결과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
  - 결핵의심과 잠복결핵감염 결과 시 결핵의심으로 결과 체크
  - ⑤, ⑥ 쿠폰을 분리하여 사용함
  - ⑤, ⑥ 쿠폰은 무료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제출 또는 보관하지 않아도 됨
  - TST를 시행하여 TST판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⑤ 쿠폰을 제출
  - 흉부 X선 결과를 당일 판독하지 않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⑥ 쿠폰을 제출

●● 객담도말 및 배양양성검사 쿠폰(결핵의심자)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자)\_앞

-




-

⑦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

수신 : 부건소장

접촉자(결핵의심)정보					
성명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주민등록주소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실제거주지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검사내역	처방일	// //	☐자비	검사일	// //
객담도말	☐균검(1회) ○ 양성 ○ 음성			판독일	// // ☐자비
	☐균검(2회) ○ 양성 ○ 음성			☉, ⊙, ⊕	// // ☐자비
	☐균검(3회) ○ 양성 ○ 음성			☉, ⊙, ⊕	// // ☐자비
	☐침도말(1회) ○ 양성 ○ 음성			☉, ⊙, ⊕	// // ☐자비
	☐침도말(2회) ○ 양성 ○ 음성			☉, ⊙, ⊕	// // ☐자비
	☐침도말(3회) ○ 양성 ○ 음성			☉, ⊙, ⊕	// // ☐자비
	☐항과 염색(침도말(1회) ○ 양성 ○ 음성			☉, ⊙, ⊕	// // ☐자비
	☐항과 염색(침도말(2회) ○ 양성 ○ 음성			☉, ⊙, ⊕	// // ☐자비
	☐항과 염색(침도말(3회) ○ 양성 ○ 음성			☉, ⊙, ⊕	// // ☐자비
	☐배양_고체(1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 ⊙, ⊕	// // ☐자비
☐배양_고체(2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 ⊙, ⊕	// // ☐자비	
☐배양_고체(3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 ⊙, ⊕	// // ☐자비	
☐배양_액체(1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 ⊙, ⊕	// // ☐자비	
☐배양_액체(2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 ⊙, ⊕	// // ☐자비	
☐배양_액체(3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 ⊙, ⊕	// // ☐자비	
※ 치료, 타진료, 추가검사료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 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의료기관명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전화번호	<input style="width: 50%;" type="text"/>
요양기관번호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진료과	<input style="width: 50%;" type="text"/>
진료의사성명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연하번호	<input style="width: 50%;" type="text"/>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면, 팩스

※ 흉부X-선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객담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의원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시행 가능

※ 객담배양검사 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불 요청할 수 있음

접촉자 작성

의료기관 작성

접촉자 작성

처방일 및 판독일 포함하여  
최대 진찰료가 4회 지원됨

⑧ ⑨ ⑩ 쿠폰 사용일 결과확인일에  
순서대로 작성

의료기관 작성

- 흉부 X선 결핵의심이 되어 객담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
  - 시행한 검사에 대해서만 체크
  - 객담도말 검사결과 후 시스템 등록(배양은 검사중으로 등록)
  - 치료 및 타진료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하여 접촉자가 부담한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고 해당 사업에서 진찰료가 지원되지 않음
  - 흉부 X선 검사당일 판독하여 객담검사를 처방하는 경우 자비란에 체크(진찰료 1회 지원)
  - 진료과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 (예 :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

##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자)\_뒤

**⑧ 객담도말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

방문일 :    년    월    일

접촉자정보		주인공복번호	
성명		SMS 종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연락처	TEL : H-P :		

※ 동 결과는 ⑧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무분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객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무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분리하여 사용

**⑨ 객담배양(액체)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

수신 :                   보건소장

방문일 :    년    월    일

접촉자정보		주인공복번호	
성명		SMS 종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연락처	TEL : H-P :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첨부 : 객담검사결과지  
 ※ 객담배양(액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무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분리하여 사용

**⑩ 객담배양(고체)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

수신 :                   보건소장

방문일 :    년    월    일

접촉자정보		주인공복번호	
성명		SMS 종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연락처	TEL : H-P :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첨부 : 객담검사결과지  
 ※ 객담배양(고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무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접촉자 작성

- 객담검사 결과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
  - ⑧ ⑨ ⑩쿠폰을 분리하여 사용함
  - ⑧ ⑨ ⑩쿠폰은 무료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제출 또는 보관하지 않아도 됨
  - 객담도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⑧쿠폰을 제출
  - 객담배양\_액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⑨쿠폰을 제출
  - 객담배양\_고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⑩쿠폰을 제출

〈서식 1〉 참여확인서

참 여 확 인 서			
의료기관번호		의료기관명	
기관분류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의원		
전화번호			
주소			
청구은행명		청구계좌번호	
접촉자검진수첩 인수자명		접촉자검진수첩 인수자연락처	
PPD시약 인수자명		PPD시약 인수자 연락처	
<p>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 검진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병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p>			







예시) PPD시약 사용현황

날짜	배정량 (vial)	사용량 (vial)	사용량(cc)		폐기량 (vial)	보관량 (vial)	Lot (제조번호)	검진 대상(건)	분실량 (vial)	반납량 (vial)
			검사량	자연 소모량						
1월 1주	100	3	1.0	3.5	-	97		10	-	-
1월 2주	-	4	1.3	4.7	-	93		13	-	-
1월 3주	-	3	0.8	3.7	-	90		8	-	-
1월 4주	-	4	1.5	4.5	-	86		15	-	-
1월 5주	-	2	0.5	2.5	-	84		5	3	-
총계	100	16	5.1	18.9	-	81		51	3	-
2월 1주	100	2	1.0	2.0		79		10		
2월 2주		1	0.1	1.4		78		1		
2월 3주		1	0.5	1.0		77		5		
2월 4주		5	1.2	6.3		72		12		
총계	100	25	7.9	10.7		72		79	3	

- ◇ 1달 동안 사용한 PPD시약의 사용현황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해당 보건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바람
  - 개봉한 vial을 기준으로 작성함(이틀에 걸쳐 사용한 시약은 개봉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 ※ 사용량 vial과 cc단위로 작성(1vial = 1.5cc)
    - ※ 폐기량 : 유효기간 경과하여 폐기하는 시약량
    - 자연소모량 : 시약 개봉 후 24시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시약량
    - ※ 반납량 :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중간에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보건소로 PPD시약 남은량을 반납함

〈서식 5〉 접촉자검진 수첩-검사쿠폰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1차검사) (앞)

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1차검사)</b>			
□ 환자 정보		수신 : 보건소장 (가족동거인 수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접촉자정보 (환자와의 관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개인정보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뒷면참조)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과거력여부	과거결핵치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과거 잠복감염결핵치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기저질환여부	<input type="checkbox"/> 규폐증 <input type="checkbox"/> 위·장절제 등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만성신부전증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알코올중독 <input type="checkbox"/> HIV <input type="checkbox"/> 스테로이드복용 <input type="checkbox"/> 면역억제제복용(TNF- $\alpha$ 등)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BCG 접종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피내 <input type="checkbox"/> 2회접종 <input type="checkbox"/> 경피 <input type="checkbox"/> 1세이후 접종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모름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검사내역 : 흉부 X선, TST, (IGRA)는 동일한 날에 처방되어 함		처방일	검사일 판독일 (②, ③쿠폰 사용일)
③흉부 X선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 /	/ / <input type="checkbox"/> 자비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결 : mm		/ / <input type="checkbox"/> 자비
<input type="checkbox"/> IGRA	<input type="checkbox"/> Quantiferon TB-Gold In Tube <input type="checkbox"/> 양양수치( )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input type="checkbox"/> T-Spot <input type="checkbox"/> 양성갯수( )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 /	/ / <input type="checkbox"/> 자비
결과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잠복결핵감염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input type="checkbox"/> 8~10주 후 추가검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여부	<input type="checkbox"/> 치료안함 <input type="checkbox"/> 치료시 처방 <input type="checkbox"/> I9월 <input type="checkbox"/> I6월 <input type="checkbox"/> I&R3월 <input type="checkbox"/> R4월 <input type="checkbox"/> 기타		
※ 치료, 타진료, 추가검사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 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의원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진료과
	진료의사성명		면허번호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1차검사) (뒤)

### ● 의료기관에 알려드립니다

- ◎ 흉부 X선검사 또는 잠복결핵감염검사(TST, IGR)를 원하는 경우, 무료로 동일한 날에 실시합니다.
  - IGR검사의 경우 TST 판독날 시행(TST 양성으로 만 13세 이상인 경우)될 수도 있음
  - 흉부 X선검사는 쿠폰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되어야 함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 X선검사(판독지), IGR, 해당 검사결과지 등 첨부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예, 수신 :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 ◎ 청구 후 15~30일 이내 보건소에서 귀 기관으로 검진비를 입금하여 드립니다.
- ◎ 각 검사결과 판독 후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쿠폰작성 방법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검사비지급 관리와 검사안내를 위해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TST를 시행하신 경우 반드시 48~72시간 이후에 해당 의료기관을 재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해당 검사에만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 (앞)

<b>②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TST판독, 정밀IGRA검사시행)</b>			
■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검사결과 및 검사내역 TST판독, IGRA 검사는 동일한 날 처방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결 :   mm		
<input type="checkbox"/> IGRA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시행    : TST검사결과 양성(10m이상)인 경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부 X선, IGRA검사만 시행한 경우 ②번을 사용하지 마시고 ③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 검사와 관련된 결과는 ①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li> </ul>			

<b>③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최종)</b>			
■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부 X선, TST, IGRA검사처방일 및 TST판독일에 최종검사결과 판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최종 판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제출</li> <li>※ 동 결과는 ①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1차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li> </ul>			

## ■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 (뒤)

- ◎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TST 시행 후 48~72시간 이내 방문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TST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1차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방문시 사용가능합니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 (앞)

④	□ □ □ □ - □ □ □ □ - □ □ □ □	
<b>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b>		
수신 : <span style="float: right;">보건소장</span>		
<b>접촉자정보</b>		
<b>성명</b>		
<b>주민등록번호</b>		
<b>연락처</b>	Tel : H,P : <span style="margin-left: 100px;">SMS 동의여부</span>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b>주민등록상 주소</b>		
<b>실제거주지</b>		
<b>검사내역 : 흉부 X- 선, TST는 동일한 날 처방되어야 함</b>		
<input type="checkbox"/> 흉부 X선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span style="margin-left: 20px;">경결 : mm</span>	
<b>처방일</b>		
<b>검사일</b>		
		<b>판독일</b> (⑤,⑥쿠폰사용일)
		/ / <input type="checkbox"/> 자비
		/ / <input type="checkbox"/> 자비
<b>결과</b>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잠복결핵감염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b>잠복결핵감염 치료여부</b>	<input type="checkbox"/> 치료안함 <input type="checkbox"/> 치료시 처방 <input type="checkbox"/> 19月 <input type="checkbox"/> 16月 <input type="checkbox"/> 1&R3月 <input type="checkbox"/> R4月 <input type="checkbox"/> 기타	
※ 치료, 타진료, 추가검사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 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의료기관</b>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의원	
	<b>의료기관명 :</b>	<b>전화번호</b>
	<b>요양기관번호</b>	<b>진료과</b>
	<b>진료의사성명</b>	<b>면허번호</b>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 (뒤)

### ● 의료기관에 알려드립니다

- ◎ 추가쿠폰대상자는 흉부 X선검사결과 정상(타질환), TST 음성(IGRA검사 미시행)으로 18세이하거나 또는 고위험군에 한합니다.
  - ※ 고위험군 : 장기간스테로이드사용자(예정자),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규폐증, HIV(+),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자, TNF 길항제 사용자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 X선검사(판독지), 해당 검사결과지 등 첨부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 예) 수신 : 서울특별시 00구 보건소장
- ◎ 청구 후 15~30일 이내 보건소에서 귀 기관으로 검진비를 입금하여 드립니다.
- ◎ 각 검사결과 판독 후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쿠폰작성 방법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검사비지급 관리와 검사안내를 위해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TST를 시행하신 경우 반드시 48~72시간 이후에 해당 의료기관을 재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해당 검사에만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추가검사 판독쿠폰 (앞)

<b>⑤ 추가검사결과 판독 쿠폰(TST판독)</b>			
▣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검사결과 및 검사내역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결 :   mm		
<p>※ 동 검사와 관련된 결과는 ④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p>※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p>			

<b>⑥ 추가검사결과 판독 쿠폰(최종)</b>			
▣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p>• 흉부 X선 판독을 검사시행 당일 또는 TST 판독 당일날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최종 판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제출</p>			

- ※ 동 결과는 ④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추가검사 판독쿠폰 (뒤)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TST 시행 후 48~72시간 이내 방문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TST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추가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방문시 사용가능합니다.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 (앞)

⑦	□ □ □ □ - □ □ □ □ - □ □ □ □																		
<b>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b>																			
수신 : <span style="float: right;">보건소장</span>																			
<b>■ 접촉자(결핵의심)정보</b>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b>■ 검사내역</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처방일</td> <td style="width: 15%;">/ / □ 자 비</td> <td style="width: 15%;">검사일</td> <td style="width: 15%;">/ /</td> <td style="width: 15%;">판독일 (⑧,⑨,⑩사용일)</td> <td style="width: 15%;">/ / □ 자 비</td> </tr> <tr> <td></td> <td></td> <td></td> <td>/ /</td> <td></td> <td>/ / □ 자 비</td> </tr> <tr> <td></td> <td></td> <td></td> <td>/ /</td> <td></td> <td>/ / □ 자 비</td> </tr> </table>	처방일	/ / □ 자 비	검사일	/ /	판독일 (⑧,⑨,⑩사용일)	/ / □ 자 비				/ /		/ / □ 자 비				/ /		/ / □ 자 비
처방일	/ / □ 자 비	검사일	/ /	판독일 (⑧,⑨,⑩사용일)	/ / □ 자 비														
			/ /		/ / □ 자 비														
			/ /		/ / □ 자 비														
<b>■ 객담도말</b>	<input type="checkbox"/> 균검경(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균검경(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균검경(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집균도말(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집균도말(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집균도말(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형광염색집균도말(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형광염색집균도말(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형광염색집균도말(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b>■ 객담배양</b>	<input type="checkbox"/> 배양_고체(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고체(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고체(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액체(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액체(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액체(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 치료, 타진료, 추가검사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 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의료기관정보</b>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의원																		
	의료기관명 : _____	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진료과																	
	진료의사성명	면허번호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 흉부 X선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객담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의원 제외)
- ※ 객담배양검사 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불 요청할 수 있음

##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 (뒤)

### ● 의료기관에 알려드립니다

- ◎ 이 쿠폰은 흉부 X선검사결과 결핵의심자로 객담검사를 원하는 경우, 무료로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를 동일한 날에 실시합니다.
  - 흉부 X선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객담검사를 시행합니다.(의원 제외)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객담검사결과지 첨부
  - 객담배양\_액체 및 고체의 경우 검사증을 체크하고 추후 제출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 예) 수신 : 서울특별시 00구 보건소장
- ◎ 청구 후 15~30일 이내 보건소에서 귀 기관으로 검진비를 입금하여 드립니다.
- ◎ 각 검사결과 판독 후 작성하시어 본 쿠폰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쿠폰작성 방법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검사비지급 관리와 검사안내를 위해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해당 검사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객담도말판독쿠폰**

<b>⑧ 객담도말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b>			
<input type="checkbox"/>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 동 결과는 ⑦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객담도말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객담배양\_액체 판독쿠폰**

<b>⑨ 객담배양(액체)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b>			
		수신 :                   보건소장	
<input type="checkbox"/>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 첨부 : 객담검사결과지
- ※ 객담배양(액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객담배양\_고체 판독쿠폰**

<b>⑩ 객담배양(고체)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b>			
		수신 :                   보건소장	
<input type="checkbox"/>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 첨부 : 객담검사결과지
- ※ 객담배양(고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객담도말판독쿠폰 (뒤)

- ◎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본 쿠폰은 객담도말 검사결과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 객담배양\_액체 판독쿠폰 (뒤)

- ◎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본 쿠폰은 객담배양(액체) 검사결과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객담검사결과지 첨부
    - ※ 단,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관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객담배양\_고체 판독쿠폰 (뒤)

- ◎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본 쿠폰은 객담배양(고체) 검사결과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객담검사결과지 첨부
    - ※ 단,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관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Q&A

### 접촉자 검진대상

**Q** 2012년 10월에 호흡기결핵환자로 진단받고 현재 치료중인 환자의 가족이 접촉자 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A** 예  
현재 호흡기결핵환자로 치료중인 가족·동거인의 경우 접촉자검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결핵으로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접촉자검진수첩을 받았는데요. 같이 다니는 회사동료에게 수첩을 전달해도 괜찮은가요?

**A** 아니오  
본 사업은 가족·동거인 등 같이 거주하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사동료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접촉자검진수첩 발급은 불가능하며 회사에서 결핵환자 발생은 「국가결핵관리지침\_결핵역학조사관리지침」에 의해 접촉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Q** 57개월 소아결핵환자가 폐외결핵으로 치료받는 경우 소아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에게 접촉자 검진을 위한 접촉자 검진수첩을 발급해 드려도 되는가요?

**A** 예  
96개월미만 소아결핵환자의 경우 진단코드에 상관없이 결핵으로 치료받는 경우 가족·동거인의 접촉자 검진을 위한 접촉자검진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Q**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동거인이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관련된 보건교육 실시와 결핵환자의 치료 중에는 언제든지 접촉자 검진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세요

**Q** 가족 중 같이 거주하지는 않는데 주기적으로 매주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접촉자검진수첩 발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하루에 8시간 이상·1주일에 5일이상 매주 거주지를 방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수첩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 첩

**Q** 결핵환자로 진단받았는데 다니는 병원에서는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A** 본 사업은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으로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을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후 접촉자검진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 참여 의료기관 현황 조회는 '결핵바로알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접촉자검진수첩을 받았는데요, 수첩 안에 포함된 쿠폰은 수첩을 발급받은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한가요?

**A**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을 참여하는 의료기관 어디서나 쿠폰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참여 의료기관 현황 조회는 '결핵바로알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검진스케줄

**Q** 5세(60개월) 미만에게 IGRA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소아환자 특히 만 5세 이하의 환자에서는 면역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 이므로 면역 검사인 IGRA의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5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 IGRA 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Q** 5세(60개월)이상인 접촉자에 대해서 IGRA검사를 시행해도 되는지요?

**A** 접촉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IGRA 검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5~18세의 경우는 비씨지 접종을 1세 이후에 접종했거나 2회 접종한 경우에만 IGRA 검진비 지원이 가능하며, 13~18세의 경우는 TST검사 양성인 경우 IGRA 검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접촉자검진을 자비로 실시하였는데, 추가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수첩발급이 가능한가요? 환자분은 A15.1로 현재 치료중입니다

**A** 추가검사는 18세이하이거나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추가검사대상자라면 접촉자 또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기존에 검사한 내역을 자비검사로 등록하신 후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 단, 쿠폰은 4번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등 록

**Q** 외국인대상자의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는데 오류가 뜨는데 어떻게 등록해야 되나요?

**A** 외국인 대상자를 입력하시는데 오류가 뜨는 경우는 외국인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 접촉자에게 연락해보니 자비로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자비검사를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접촉자 및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검사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정보를 모두 등록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비검사로 등록가능하며, 검진일정대로 검사하셨다면 그 이후 쿠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 검진비 지급

**Q** 검진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본 수가만 지급해야 되는지?

**A** 본 사업은 관행수가에 맞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관련 학협회와 협의 후 검진비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본 수가만 지급 가능합니다.(검사비+진찰료 포함된 수가임)

**Q** TST 판독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A** TST시행 후 48~72시간 이내 판독하여야 하며 이후에 시행된 것은 판독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IGRA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도 되는지와 의뢰하는 지정된 의료기관이 있는지요?

**A** 의뢰가능하며 지정된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의뢰한 경우도 동일한 수가로 검진비가 지원됩니다.

**Q** 접촉자가 사업시행 전 자비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사업시행 전 자비로 시행한 검사한 의료기관 협조 하에 환불 가능합니다.

**Q** 접촉자 검진시 특진비를 접촉자에게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A** 의료기관 내규에 따라 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Q** 의료기관 결핵환자의 접촉자가 보건소에 가서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핵환자의 관할 보건소에 접촉자수첩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접촉자 검진시 다른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접촉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A** 본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접촉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접촉자검진 쿠폰을 사용한 날 잠복결핵감염치료약을 처방한 경우 잠복결핵감염치료약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A** 접촉자검진 쿠폰을 사용하여 진찰료를 지원 받으셨으면 잠복결핵감염치료약 처방을 보험청구하여 진찰료를 이 중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치료약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관리)

## ○ Contents

○ 주요변경사항	60
○ 1. 사업개요	61
○ 2. 사업추진체계	63
○ 3. 사업내용	66
● 가. 지원대상	66
● 나. 지원범위	66
○ 4. 사업추진방법	68
● 가. 사업참여 및 교육	68
● 나. 환자신고 및 관리	68
● 다. 관리비 신청 및 지급	71
○ 부록. 1. 관련서식	74
○ 2. 교육자료	78

##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2년	2013년
내 용	지급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달에 한 번 지급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로 지급신청</li> </ul>



## 사업개요

### 가. 사업 목적

-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철저한 환자관리로 인한 꾸준한 복약과 결핵치료 중단의 최소화로 치료성공률을 향상시켜 내성결핵 방지 및 결핵의 조기퇴치

### 나. 사업 목표

구분	목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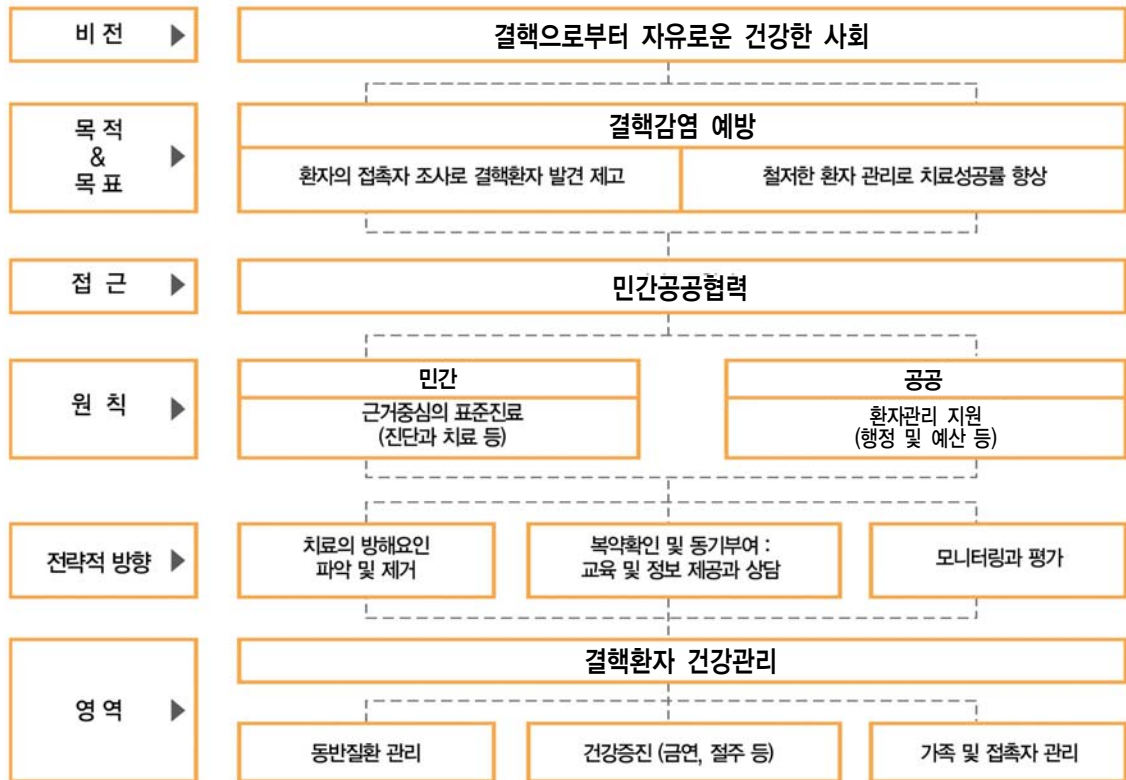
〈 2013년 목표 〉 도말양성 결핵환자(신환, 약제감수성)의 치료 성공률을 80% 이상 달성한다.

등록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결핵환자를 등록 및 관리 (전체결핵환자 100% 관리)</li> </ul>
결핵진단 및 치료의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방법 시행 (표준진단준수율 75%, 표준치료준수율 75%)</li> </ul>
치료성공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 성공률 증가</li> <li>• 치료 중단을 감소</li> </ul>
내성결핵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성결핵 감소</li> </ul>

#### 〈중장기 목표〉

결핵환자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환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내성결핵을 방지하고, 합병증 및 사망 등이 감소되어 삶의 질 향상</li> </ul>
결핵 조기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발생 50명/10만명을 2020년에 달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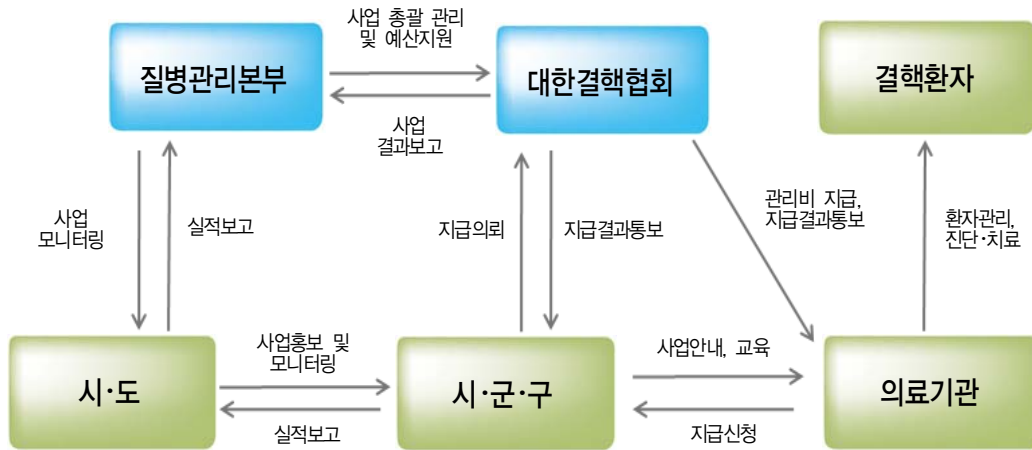
## 다. 사업개념도



## 라. 추진경과

2011.3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계획수립
2011.4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 사업안내 및 MOU체결
2011.5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의료기관 담당자 교육
2011.6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실시(350개 의료기관)
2012.1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지속 실시(432개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시스템 오픈

가. 사업수행체계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수행 체계도]

나. 기관별 역할

질병관리본부

- 사업 총괄 관리 및 예산지원
  - 행정, 예산 지원 등 사업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 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 사업교육 지원

시·도

- 시·군·구 사업 안내 및 홍보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
- 시·군·구 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 사업 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 ●● 시·군·구

- 사업홍보 및 교육
- 환자관리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 평가
- 관리비 지급의뢰
- 사업 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 ●● 대한결핵협회(결핵 연구원)

- 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 기술·행정 지원
  - 결핵환자관리비 지급 및 내역 통보
- 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 결과 제출

### ●● 의료기관

- 표준결핵진료지침에 근거한 결핵 진단과 치료
- 결핵관리담당자 지정(해당교육 참석 이수)
- 환자관리 진료정보 제공(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 결핵환자관리 및 관리비 청구

## 다. 업무분장

구분		담당 업무
병원	의사	- 결핵 진료지침에 근거한 환자진료
	결핵관리 담당자	- 사업 참여 관련서류 제출(사업참여확인서, 통장사본) - 결핵관리담당자 지정 ※ 간호사가 없을 경우, 의사를 지정인으로 함 -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교육 수료 - 결핵환자 관리 - 결핵환자관리비 지원신청
시·군·구 (보건소)	보건소장	-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의사	- 결핵 진료지침에 근거한 환자진료 - 결핵 환자 치료 결과 분석 및 치료 방해 요인 해결
	결핵관리 요원	-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 - 관할 민간병의원에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 환자관리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평가 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으로 결핵 환자관리비 지급의뢰 - 시도로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실적보고 - 민간의료기관 등록 결핵환자 추구관리 ※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입력이 어려울 경우 협조하여 환자관리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 민간 의료기관 등록 결핵환자 추구관리 · 관할 의료기관의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100% 참여
시·도	결핵관리 의사	- 결핵환자 진료 등에 대한 기술지도·감독 - 결핵 환자 치료 결과 분석 및 치료 방해 요인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결핵 담당자	-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분석, 평가 등 행정지원 - 질병관리본부로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실적보고



## 사업내용

### 가. 지원대상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환자 100명 미만, 심평원 청구인원 200명 미만인 의료기관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지 않은 의료기관

### 나. 지원범위

#### 지원항목

- 환자 관리비
  - 민간 병의원의 결핵관리담당자가 결핵환자에 대한 내원독려, 복약확인, 부작용 관리사항 등을 등록할 경우 지원
    - \* 단, 의료기관에서 환자관리 입력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에 협력을 요청하여 수행
  - 지원기준
    - 관리환자 1인당 월 9,000원(단, 퇴록결과 중 진단변경 제외)
    - 중단퇴록은 월 4,500원 지원
    - \* 치료중단 :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항결핵제 투약)가 중단된 경우

구분	최대 지원 개월 수 (1인/1년 기준)	최대 관리비 (1인/1년 기준)
일반결핵 (6개월, 단기 표준치료처방)	6개월	54,000원
내성결핵	12개월	108,000원

- 전출/전입의 경우에는 환자관리시작일 이후 2주(14일)이상 관리했을 경우 1개월분 관리비 지급
- 치료 시작시 흉부 X선 사진에 공동이 있고 동시에 치료 2개월 후 시행한 배양결과 양성이면 9개월 지원 가능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 교육을 위한 자료(결핵진료지침, 환자관리 안내책자, 홍보리플렛)제공
  - 민간 병원에서 결핵환자 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해당 민간단체가 개발한 각종 자료 제공

#### 지원조건

- 보건소에 신고된 결핵환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 퇴록한 결핵환자중 치료결과가 완치, 완료, 실패, 중단, 전출, 사망의 경우 지원 가능
- 표준결핵진료지침에 의해 진단 및 치료 한 후 퇴록된 결핵환자

등록구분			퇴록구분		
1	신환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1	완치	치료 종결 후(마지막 달) 시행한 객담 배양이 음성이며 그 전에 한번이상 배양이 음성이었던 경우
			2	완료	치료를 완료하였지만, 치료 종결 후(마지막 달)의 객담 도말 및 배양 음성 결과가 없거나 그전에 한 번 이상 도말 및 배양 음성 결과가 없을 때
2	재발	과거 결핵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3	실패	치료 4개월 후 또는 그 이후 시행한 배양이 양성인 경우 또는 치료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
3	초치료 실패	과거 치료에 실패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4	사망	어떤 이유로든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4	중단 후 재등록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중단한 자	5	치료 중단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된 경우
			6	전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어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5	전입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온 환자	7	진단 변경	타 질환으로 진단이 변경된 경우
6	만성 배균자	재치료(2차 항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 양성인 환자	※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결과 및 배양에서 2회 이상 비결핵항산균이 판정되면 진단변경으로 퇴록시키고 전문가관에 의뢰 ※ 치료성공 : 완치 혹은 완료된 경우		

\* 결핵진료지침(2011)



## 사업추진방법

### 가. 사업참여 및 교육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은 아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 보건소로 메일,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구비 서류 : 참여관련 서류서식 2, 통장사본 1부
- 참여 의료기관은 결핵관리담당자를 지정함
  - 결핵관리담당자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 간호사가 없는 병원의 경우, 의사를 지정인으로 함
  - 결핵관리담당자는 결핵환자관리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교육 수료
  - 결핵관리담당자는 각 시·도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시·군·구

- 의료기관 참여 확인서를 토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료기관 관리 항목에 등록
-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결핵관리담당자
  - 교육내용
- 결핵환자관리 목적 및 필요성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환자등록관리 방법
- 결핵환자 관리 자료제공의 필요성 및 협조사항(보건소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및 결핵관리 담당자에게 자료제공 협조)

### 나. 환자신고 및 관리

#### 의료기관

- (환자신고) 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시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odc.go.kr>)에 직접신고 또는 관할보건소에 팩스 등으로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현재 선택하신 메뉴는 "결핵관리 > 신고관리 > 환자관리(등록)" 입니다.

### 연혁사항

입수일자	2013-01-25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보건소환자 <input type="radio"/> 병의원환자
시도구분		등록번호	
보건소코드			
의료기관코드			
담당의			
환자성명		성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주민번호	- / - / - <input type="checkbox"/> 불명 <input type="checkbox"/> 불명사유선택	직업	<input type="text"/>
나이	만 / 세	입국일자	<input type="text"/>
국적	<input type="text"/> (주민번호찾기) <input type="checkbox"/> 불명		
주소	(도로명) <input type="text"/> (지번)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기관구분1	<input type="text"/> (선택) <input type="checkbox"/> 기관구분2 <input type="text"/> (선택) <input type="checkbox"/>	기관명	<input type="text"/> (찾기)
기관(학교)주소	(도로명) <input type="text"/> (지번) <input type="text"/>		

### 결핵과거치료력

과거치료력  유  무  모름

치료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모름

과거치료횟수  1회  2회이상  모름

### 결핵초회검사

검사결과  유  무  모름

BOB반응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input type="radio"/> 모름	BOB진증법	<input type="radio"/> 폐내 <input type="radio"/> 경피 <input type="radio"/> 불명
객담도말검사	<input type="checkbox"/> 미검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input type="text"/>	객담배양검사	<input type="checkbox"/> 미검 <input type="checkbox"/> 고배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input type="text"/>
객담침강액도말검사	<input type="checkbox"/> 미검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input type="text"/>	객담이원검체배양검사	<input type="checkbox"/> 미검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input type="text"/>
조직검사	<input type="checkbox"/> 미검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input type="text"/>	기타검사	<input type="checkbox"/> 미검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input type="text"/>
흉부 X-선 검사 (Ct, MRI 등)	<input type="checkbox"/> 미검 <input type="checkbox"/> 공통 유 <input type="checkbox"/> 공통 무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input type="text"/>	TST검사	<input type="checkbox"/> 미검 <input type="checkbox"/> 경결크기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확인일 <input type="text"/>
IGRA검사	<input type="checkbox"/> 미검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input type="text"/>	IGRA 검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 약제감수성

약제별 내성 검사결과 (내성 약제만 선택)

미실시  실시

검사중  H  R  E  Z  Rfb  Ks  Ask  S  Lfx  Bfx  Ofx  Pto  Cs  PAS  Lzd  Cir

기타

약제별 내성 검사결과 (약제명 선택)

미실시  실시

검사중  H  R  E  Z  Rfb  Ks  Ask  S  Lfx  Bfx  Ofx  Pto  Cs  PAS  Lzd  Cir

기타

신속감수성 검사결과

미실시  실시

H  R

신속감수성 검사결과

미실시  실시

R

### 결핵종류

폐결핵  폐외결핵 (+아래 병변위치를 필히 기재)  폐결핵 + 폐외결핵 (+아래 병변위치를 필히 기재)

### 병변위치

호흡기계 :  종격막  흉막내림프절  후두기관 및 기관지  일차호흡기  기타호흡기  상세불명의호흡기

신경계 :  수막결핵  수막외결핵증  뇌막액수의결핵증  결핵성수막뇌염  결핵성신경염  기타신경계통  상세불명의신경계통

기타기관계 :  척추  기타관절의결핵성관절염  기타뼈  기타뼈및관절  심장및요관  방광  기타비뇨기관  전립선  기타남성생식기관

자궁경부  결핵성여성골반염증성질환  기타여성생식기관  상세불명의비뇨생식기관  결핵성말초림프절병증또는결핵성림프절염  결핵성폐수막염

결핵성장염  장관막림프절및후복막(림프절)  피부및피하조직  눈  귀  부신  갑상선  기타내분비선

말라분류되지않은소화기관  심장  비장  기타부위

흉외결핵 :  흉외부위생식기관  흉외부위골수골결핵  흉외부위근육골결핵  상세불명의흉외결핵

기타결핵 :  결핵혈우양인(가형)  결핵의후유증  결핵과관련된질환증

원신, 용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결핵  선천결핵

### 질병코드

A15.00 (해당 '해당'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흉막경' '검사료' '확인일' '공통이' 있는 '폐결핵')

선택

### 환자치료

최초내원일자

환자구분  (신환)

추구관리  관리  관리안함  (  소거화 )

치료시작일자  (또는 약제시작일자)

추구관리시작일

치료약제  H  R  E  Z  Rfb  Ks  Ask  S  Lfx  Bfx  Ofx  Pto

Cs  PAS  Lzd  Cir  기타

치료종결일자  (  소거화 )

치료결과 및 등록구분  완치  완료(진정불가)  실패   중단   견출

결핵관련사망  기타사망  진단변경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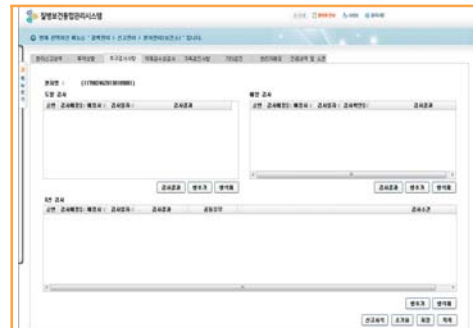
저장    목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환자신고]

- (환자관리) 결핵환자 복약확인, 상담 등 환자관리를 수행한 내용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기본사항 : 환자의 인적사항 및 결핵초회검사 등 결핵환자의 신고내용
    - 투약상황 : 결핵환자의 투약일수 및 용량
    - 추구검사사항 : 초회검사 이후에 실시한 흉부 X선검사, 도말검사, 배양검사 결과
    - 약제감수성검사 : 약제에 대한 내성검사 결과
    - 가족검진사항 : 환자의 접촉자검진
    - 관리자 메모, 진료내역/소견
- [서식 3] 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 환자관리 자료제공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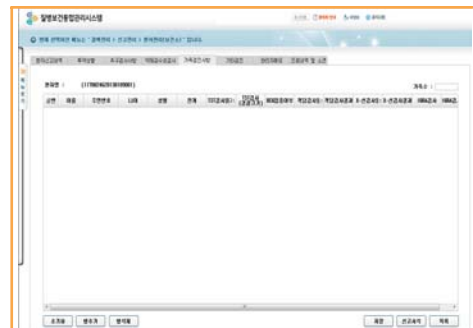
환자관리 <투약상황>



환자관리 <추구검사사항>



환자관리 <약제감수성검사>



환자관리 <가족검진사항>



환자관리 <관리자메모>



환자관리 <진료예약/소견>

- 신고화면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반드시 입력되어야 환자관리 리스트에 환자가 생성됨
  - 추구관리 유무, 추구관리시작일
  - 치료종결일자, 치료결과 및 퇴록구분

### 시·군·구

-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의료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환자관리 내용을 입력 할 수 없을 경우, 의무기록 및 자료제공을 받아 입력함

## 다. 관리비 신청 및 지급

### 의료기관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결핵환자관리비 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지급신청서)
- 신청시기 : 퇴록환자 발생 시 관리비 신청 가능 (단, 중단 퇴록은 1/2 지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에서 (결핵관리 > 사업관리 > 환자관리비지원) 환자관리로 들어가서 지급신청대상 등록함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의료기관의 관리비 지원 해당환자 조회
  - 지급대상 환자를 선택하여 지급신청대상등록
- 치료시작 시 흉부 X선사진에 공동이 있고 동시에 치료 2개월 후 시행한 배양결과 양성인 환자, 의사소견에 따라 9개월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는 (공동유 배양양성)박스를 체크하여 지급신청대상등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아웃 | 내정보 | 공지사항 | 시스템별 담당자 안내 및 사용자 메뉴얼 보기 | 안내문의 02)358-1420

현재 선택하신 메뉴는 "결핵관리 > 사업관리 > 환자관리비지원 > 환자관리" 입니다.

시도	서울특별시	보건소	전체	의료기관
퇴록일	2001-01-01 ~ 2012-12-03	신고일		
환자이름		주민번호		
지급신청	전체	추구관리여부	관리	

순번	선택	신고기관	신고일자	환자이름	성별	나이	환자구분	치료결과	결핵코드	퇴록일	공동유 배양양성 의사소견	추구관리 개월수	지급요청금	일반결핵 내성결핵	지급신청	지급신청일	지
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2-02-22				신환	완치	A15.30	2012-08-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6개월	54,000	일반결핵	지급	2012-09-11	2
25	<input type="checkbox"/>		2011-05-23				신환	완치	A18.83	2012-06-27	<input type="checkbox"/>	6개월	54,000	일반결핵	지급	2012-06-27	2
26	<input type="checkbox"/>		2011-06-27				재발	완치	A16.91	2012-03-27	<input type="checkbox"/>	6개월	54,000	일반결핵	지급	2012-04-26	2
27	<input type="checkbox"/>		2011-08-23				신환	완치	A15.00	2012-06-27	<input type="checkbox"/>	6개월	54,000	일반결핵	지급	2012-06-27	2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에서 (결핵관리 > 사업관리 > 환자관리비지원) 지급신청서)로 들어가서 관리비를 신청함
  - 환자관리목록에서 지급신청대상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상태, 신청일로 검색 후 대상자 선택하여 신청버튼 클릭

※ 신청상태

- 신청대기 : 환자관리 목록에서 지급신청대상등록한 환자들이 지급신청서목록에 저장되어있는 상태
- 신청완료 : 지급신청서 목록에 저장된 환자를 선택하여 신청한 상태
- 반려 : 관리비를 신청했으나, 자료 기입 미비로 보건소에서 반려 상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에서 (결핵관리 > 사업관리 > 환자관리비지원) 지급결과통보서)로 들어가서 지급결과를 확인
  - 지급일자 및 환자명을 검색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금액 확인가능

### ●● 시·군·구

- 의료기관에서 관리비 신청시 환자관리 자료확인
- 해당 환자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리사항 확인
- 환자관리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 평가
- 제공받은 자료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관리사항에 기재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 지급 의뢰

###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관리비 지급을 의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해당의료기관에 관리비를 지급
-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에 지급결과 통보

〈서식 1〉 사업안내문

###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안내문

본 사업은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동 의료기관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결핵환자의 표준화된 결핵진단 및 치료, 환자관리 등 철저한 환자관리 실시로 결핵 감소 및 내성 결핵 방지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절차 －

1. 관할 보건소에서 배부한 사업참여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보건소로 송부한다.  
※ 결핵관리담당자 지정(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2. 결핵환자 발생 시 팩스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3. 의료기관에 등록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에 준하여 치료하고, 정기적인 환자관리(복약확인 및 결핵교육 등)를 실시한다.
4. 결핵환자의 관리 자료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 단,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입력이 어려울 경우 Fax로 관할 보건소에 전송한다. 또한 관할 보건소 결핵 담당요원 및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해당의료기관 방문시 결핵환자에 관한 자료(의무기록열람 등)를 제공한다.
5. 등록된 결핵환자가 퇴록할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퇴록 입력 후 지급 신청한다.  
※ 관리비 : 9,000원/월/인 (단, 진단변경 제외, 중단 퇴록은 1/2 지급)

구분	최대 지원개월 수 (1인/1년 기준)	관리비 (1인/1년 기준)
일반결핵 (6개월, 단기 표준치료처방)	6개월	54,000원
내성결핵	12개월	108,000원

\* 표준결핵진료 지침에 근거해 재발 등으로 9개월 처방시는 81,000원까지 가능

\* 전출/전입의 경우에는 추후관리시작일 이후 2주(14일)이상 관리했을 경우 1개월분 관리비 지급

〈서식 2〉 참여확인서

###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병 원 명 : (요양기관코드: )  
 주 소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본 기관은 결핵환자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병원 계좌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명:
결핵관리 담당자	성명	
	부서명	
	면허번호	
	연락처	

※ 결핵관리담당자를 지정 못하는 경우에는 결핵진료의사 면허번호 기재  
 첨부 : 통장사본 1부. 끝.

년 월 일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서식 3〉 환자관리 자료제공 서식

<b>결핵환자관리비지원사업 환자관리 자료제공서식</b>								
<b>기본사항</b>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코드					
담당 간호사명								
환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추구관리 유무			추구관리 시작일					
<b>투약상황</b>								
진료예정일			결핵약처방일					
약제명	H (INH)	R (RMP)	E (EMB)	Z (PZA)	Rfb (RFB)	Km (KM)	Amk (AK)	S (SM)
용량 (mg)	mg	mg	mg	mg				
약제명	Lfx (LFX)	Mfx (MFX)	Ofx (OFX)	Pto (PTA)	Cx (CS)	Pas (PAS)	Lzd (LZD)	Clr (CLR)
용량 (mg)								
<b>추구검사사항</b>								
〈도말검사〉				〈배양검사〉				
검사예정일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예정일	검사일자	검사결과		
〈흉부 X선검사〉								
검사예정일	검사일자	검사결과		공동유무		검사소견		

약제감수성검사					
검사일	검사확인일		감수성구분	약제감수성/신속감수성	
약제	isoniazid	rifampicin	ethambutol	pyrazinamide	
내성유무(유,무)					
약제	levofloxacin	moxifloxacin	ofloxacin	protionamide	
내성유무(유,무)					
약제	rifabutin	kanamycin	amikacin	streptomycin	
내성유무(유,무)					
약제	cycloserine	p-aminosalicylicacid	Linezolid	clarithromycin	
내성유무(유,무)					

가족검진사항					
이름	나이	성별	관계	TST검사일자	
TST검사(경결크기)	BCG접종	객담검사일	객담검사결과	X선 검사일	X선 검사결과

기타검진								
체중검사	시력검사		색맹	색약	혈소판 수치	요산검사		
	좌	우						
간기능검사		요산 검사	신장기능검사			말초혈액검사		
AST	ALT		요당	BUN	Creatinine	RBC	WBC	HB

관리자메모	
작성일	내용

진료예약/소견	
예약일	검사내역
검사일	진료내역 및 소견

▶ 교육자료1\_ 항결핵제

1차 항결핵제

약 그림	약제 이름	용량(최대 용량)	부작용
	Isoniazid (이소니아지드)	식후, 하루 한 번 5mg/kg(400mg)	간독성, 말초신경염, 피부과민반응
	Rifampicin (리팜핀)	공복시, 하루 한 번 10mg/kg(600mg) 450mg(<50kg) 600mg(>50kg)	간독성, 독감양증후군(flu-like syndrome), 피부과민반응, 혈소판감소증
	Ethambutol (에탐부톨)	식후, 하루 한 번 800mg/kg(<50kg) 1,200mg(50-80kg) 1,600mg(>80kg)	시신경염 (시력저하 및 색각의 변화)
	Pyrazinamide (피라진아미드)	식후, 하루 한 번 1,000mg/kg(<50kg) 1,500mg(50-70kg) 2,000mg(>70kg)	간독성, 관절통, 위장장애
	Rifabutin (리파부틴)	공복시, 하루 한 번 5mg/kg(300mg)	간독성, 호중구 감소증

2차 항결핵제

약 그림	약제 이름	용량(최대용량)	부작용
	Prothiomamide (프로치온아미드)	식후, 하루 두 번 250~500mg,	위장장애, 간독성
	Cycloserin (시클로세린)	식후, 하루 두 번 250~500mg,	우울증, 정신장애
	Moxifloxacin (목시플록사신)	식후, 하루 한 번 400mg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Levofloxacin (레보플록사신)	식후, 하루 한 번 500~1000mg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PAS(파스)	식후, 하루 세 번 3.3g(12g)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부불쾌감, 간독성
	*주사제 Kanamycin(카나마이신) Amikacin(아미카신) Capreomycin(카프레오마이신) Streptomycin(스트렙토마이신)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 50세 미만: 15mg/kg(1.0g) 50세 이상: 10mg/kg(750mg)	이독성, 신독성, 입주위 저린 증상
	Ofloxacin 100mg (오픈플록사신)	식후, 하루 한 번 300~600mg,	위장장애, 간독성, 신독성, 건파열

\* 최대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권고량이 최대량임

\* 소아 용량은 소아 청소년 결핵진료지침 단원 참조

## ▶ 교육자료2\_ 결핵환자 관리방법

### ■ 결핵환자관리

#### 1. 등록관리 대상

- 관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기존 및 신규 결핵환자 100%(담당 진료의사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 신고 일시에 관련 없이 모든 결핵환자가 관리 대상
- 타 의료기관에서 결핵 치료 중 전원 되어 온 자

#### 2. 등록 방법

- 매일 오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할 민간 병·의원이 직접 신고한 환자 목록을 보고 등록 대상자 파악
-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Fax를 이용해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는 직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시킴
  - ※ 보건소 담당자(결핵관리요원, 보건소 지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병·의원에서 서면(우편 또는 팩스)으로 신고할 경우,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에 입력함

#### 3. 등록관리 서비스

- 병원 치료일정 안내, 복약 안내 등의 보건교육을 통하여 지속치료를 향상을 위한 Recall, Remind 서비스로 결핵환자 사례관리
- 정기적인 추구관리는 전화 및 면담을 2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단, 환자에 따라 일정을 맞추어 관리
- 내원 예정일 1-2일 전에 확인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여 예정된 일자에 진료를 받도록 함
- 병원 내원일 후에는 투약처방 및 진료 상황(추구검사)을 확인함
- 환자와의 전화상담으로 투약방법과 투약상황을 매번 확인하고, 의무기록 통하여 추구객담 및 엑스선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관리사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함
- 추구검사의 결과는 필요하다면 알려주나 주치의로부터 치료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함. 단, 균음전된 경우에는 치료가 양호함을 알려 치료의욕을 북돋아줌
- 내원일이 지나서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지속적인 내원을 독려하고 치료의 중요성 재교육 실시
  - 등록관리 탈락자는 지속적인 개별상담 및 보건소 의뢰 등의 추구관리, 보건교육 재실시 등

#### 4. 동기조성

- 환자는 진단 후 되도록 초기에 첫 면담 및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하며, 결핵치료에 필요한 정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도 탈락없이 끝까지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동기 조성 실시

- 초회 면담 및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활용하여 환자를 교육하고 결핵관리 요구도에 따라 관리 시작
- 동기 조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환자 본인은 물론 가능한 한 환자 가족들도 적극 유도하여 참석시킴
  -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를 선택
  - 알기 쉬운 말을 사용
  -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인 수준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추어 상담
  - 충분한 질문 시간을 줌
  - 추구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명함 및 연락처를 제공
- 동기 조성 시 교육내용
  - 진단결과(객담검사 및 엑스선 소견)에 대하여 설명
  - 추구검사의 중요성을 이해시킴
  - 약제 복용방법을 설명하고 복용에 따른 불편한 증상은 극복해야 하나 약제부작용이 발생하면 주치의 혹은 결핵담당 간호사에게 상담하고, 에탐부톨 복용자의 경우 시각상의 불편함이 인지되면 반드시 상담토록 교육
  - 첫 면담 시에 시력검사 및 색맹검사를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해 둠
  - 가족 검진을 권장(접촉자 검진 지침 참고)
  - 음식, 식기, 피부접촉을 통해서는 전염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
  - 치료기간은 초치료인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주지시킴
  - 약제감수성 결핵인 경우 치료 후 2주 정도 지나면 전염성은 거의 소실된다는 것을 설명 단, 내성 결핵인 경우, 전염성 소실 기간은 객담검사 결과에 따른다는 것을 강조
  - 마지막으로 결핵은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 규칙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 5. 수약 불협조자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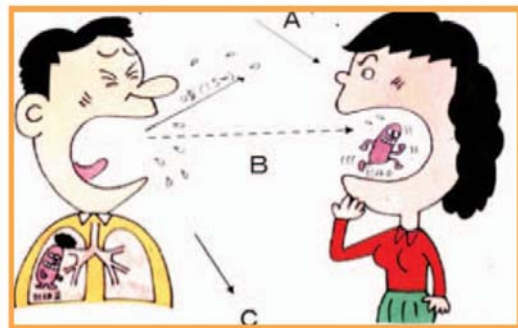
- 수약 예정일로부터 3-4일 후에도 수약하지 않을 때는 전화를 통하여 수약 중단 이유를 확인하고 복용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내원하도록 독려
- 수약 예정일 7일 이내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전화를 통하여 계속 치료받도록 권유함
- 수약 불협조자 중 전염의 우려가 큰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 환자 혹은 다제내성환자인 경우에는 진료한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 명령을 실시함(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지침 참고)
- 등록 환자가 치료도중 2개월 이상 계속 수약하지 않으면 중단 퇴록 조치함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환자관리사항 입력(<http://is.cdc.go.kr>)

▶ 교육자료3\_ 결핵환자관리 교육자료

■ 결핵은 어떻게 발병하는가?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결핵균은 Mycobacterium tuberculosis라는 이름의 세균인데, 치료를 받지 않은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침방울 안에 이 세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작은 가래 방울을 다른 사람이 흡입하면 결핵균이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결핵균은 서서히 자라 그 수를 늘려가며 균덩어리를 만들어 폐를 조금씩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결핵균이 들어 있는 가래방울이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가래방울은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코나 기도의 입구에 걸릴 정도로 큰 것이어서 폐 속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래방울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결핵균은 다른 전염병들을 일으키는 균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감기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은 균이 몸 속에 들어온 후 수일 내지 수주의 일정한 잠복기 후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핵은 일단 감염이 이루어져도 정해진 잠복기가 없어 언제 발병하게 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몸 속에서 존재하면서 평생을 두고 언제라도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균들을 공격하여 방어를 하고, 그 중 일부는 잡혀 들어가 세포 속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이 균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당뇨병,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제 사용, 영양실조, 만성 신부전증, 알코올 중독, 규폐증, AIDS 등으로 환자의 방어체계가 약해졌을 때 자기를 감싸고 있던 세포를 죽이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사람의 10%에서만 발병을 하고 나머지 90%는 감염은 되었어도 발병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 ■ 결핵의 증상은?

### 1. 전신 증상

- 발열(미열): 결핵 환자에게서 생기는 특징적인 열의 양상은, 주로 오후에 열이 나서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결핵 환자의 열나는 증상이 전형적일 때는 잠을 잘 때 식은땀을 많이 흘려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이 나기도 합니다.
- 피로감
- 식욕부진
- 체중감소
- 여성에서 월경 불순

### 2. 호흡기 증상

- 기침: 처음에는 마른기침만 나오다가 가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래는 특징이 없이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으며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 객혈: 대개 소량이며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흉통: 숨을 쉴 때 가슴속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상당히 진행하여 폐가 많이 파괴되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성 결핵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결핵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찍은 흉부 X선의 이상 소견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결핵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특이한 증상은 뚜렷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몸 속에서 결핵균을 키우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기 증상이 2-3주 이상으로 만성적일 때 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 결핵의 진단은?

### 1. 객담 (가래) 검사

폐결핵을 진단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은 바로 객담(가래) 검사입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의 객담을 받아 결핵균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고(도말검사), 동시에 결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의 배지에 균을 키워보고 균이 자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배양검사). 도말검사는 수 일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객담 안에 많은 수의 결핵균이 있어야만 양성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배양검사는 결핵균 숫자가 많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어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핵균 배양에는 2주-8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말 검사에서 결핵균이 없더라도 배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배양검사는 결핵의 진단과 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밤새 폐에 고인 가래를 뱉어내는 아침 첫 가래에 결핵균이 많이 모여 있으므로 아침 첫 가래를 모으는 것이 좋고 대개 보통 2, 3회 이상 반복해서 검사를 합니다.

## 2. 흉부 X선검사

폐결핵으로 인해 생긴 폐의 염증이나 상처가 흉부 X선검사의 이상소견으로 나타나므로 결핵의 진단에 이용합니다. 그러나 흉부 X선검사서 결핵으로 보이는 병변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활동성 폐결핵은 아닙니다. 다만 가래가 없는 환자에서 간접적인 진단에 도움이 되며 방사선 사진에서의 이상 소견의 크기 변화를 통해 결핵의 활동성 여부나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우연히 흉부 X선에서 발견되어 결핵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3. CT(컴퓨터 단층촬영)

CT는 우리 몸을 마치 단면으로 자른 것과 같은 영상을 보여주므로 흉부 X선검사에 비해 훨씬 더 자세하게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병변의 크기나 침범된 부위, 결핵의 활동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4. 기관지 내시경

위의 방법들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기관지 결핵 여부를 진단할 때 내시경을 통해 직접 기관지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면 원하는 부위에 기관지 내시경을 넣어 접근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세척액으로 결핵균을 관찰해볼 수 있습니다.

## 5. 결핵 피부 반응검사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균의 배양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투베르쿨린(Tuberculin)이라는 물질에 대한 과민성이 생기므로 이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팔에 주사한 후 모기에 물린 것처럼 튀어나오는 경결의 모양을 만져보고 양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검사가 양성이면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결핵이 발병했다는 뜻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단 자체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잠복결핵감염 진단에 사용합니다.

## ■ 결핵의 치료는?

### 1. 약물 치료

결핵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약을 성실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결핵 환자는 약을 밥 먹듯 밥을 약 먹듯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치료는 첫째도 약이요, 둘째도 약입니다. 규칙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결핵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몸의 영양 상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충분한 영양 보충을 한다거나 몸을 피로하지 않게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결핵은 다른 질병들보다도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므로 환자 자신의 부주의 또는 그릇된 치료에 의해 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평생 고생하는 난치환자로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결핵치료의 원칙〉

### 1. 약의 처방이 적절해야 합니다.

결핵치료약의 처방은 담당 전문의에게 적절하게 받아야 하고, 일반적인 1차 결핵치료에는 효과가 입증된 네 가지 약제를 6개월간 사용하는 표준용법을 쓴다. 또한 결핵 약제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 충분한 용량의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충분한 용량의 약을 지시된 방법에 의해서 복용을 하거나 주사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거나 또는 부작용이 두려워서 환자 마음대로 약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반대로 빨리 낮고 싶은 마음에서 약의 용량을 함부로 늘려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3.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 복용은 빠뜨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 4. 충분한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일찍 마음대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지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 5. 입원 치료

고열, 객혈, 심한 호흡곤란, 기흉, 농흉 등의 합병증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특히 당뇨병)이 있어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를 합니다.

### 6. 수술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이 심하여 약이 듣지 않는 환자의 일부에서나 폐결핵으로 인한 합병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 ■ 결핵약의 부작용은?

결핵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 부작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결핵약 복용을 끊고 담당의사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1. 위장관 장애

구역, 식욕부진, 가벼운 복통이 가장 흔하며 구토와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다음 진찰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증상이 심하여 약을 복용할 수 없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약제를 조절하여야 합니다.

## 2. 간에 대한 부작용

미열, 식욕부진, 간부위(오른쪽 상복부)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심하게는 황달, 매우 드물게는 급성 간기능부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기 증세가 의심되면 즉시 약물 복용을 끊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결핵 치료 중 알코올의 섭취, 한약, 보약, 개소주 등은 약물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간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합니다.

## 3. 리팜핀의 부작용

리팜핀은 소변, 눈물 및 땀 등의 분비물을 적황색으로 변하게 하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소프트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은 렌즈가 착색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혈이 발생하거나 멍이 생길 때는 혈소판감소의 부작용이 의심되므로 즉시 약을 끊고 의사를 방문하십시오.

## 4. 에탐부톨의 부작용

에탐부톨은 드물지만 눈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과적 질병이 있으신 분은 치료 전 반드시 안과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항결핵제 복용 전에 시력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중 시력 감퇴, 시야의 가운데나 주변부가 안 보이는 경우, 적록색을 구분 못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5. 피라지나미드의 부작용

피라지나미드는 혈중요산을 증가시켜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작용으로 안면 홍조가 있으며 드물게 피부의 과민반응과 광선과민증 반응에 의하여 햇빛 노출부위의 피부가 검붉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발진, 발열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핵진료지침\_결핵치료 중 부작용의 발생 시 대처방법 참고)

## ■ 결핵의 합병증은?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결핵성 흉막염, 기관지확장증, 진균증, 객혈, 개방성 공동, 기관지결핵, 농흉, 폐암 등이 있습니다.

결핵균이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외 결핵으로, 좁쌀 결핵, 림프절 결핵, 결핵성 흉막염, 결핵성 뇌막염, 장 및 복막강 결핵, 비뇨생식기 결핵, 뼈 및 관절결핵 등이 있습니다.

## ■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할 경우

- 결핵 치료 중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 눈동자 혹은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거나 구역질이 나는 경우
- 피부에 발진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가려운 경우
- 피부에 점상출혈(여러 개의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코피가 잘 나는 경우
- 눈이 잘 안보이거나 적색과 녹색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
- 소변의 양이 줄어들거나 안 나오는 경우

## ■ 결핵에 관하여 자주 접하는 질문들

- “결핵 환자가 쓰던 물건을 함께 사용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면 결핵에 옮을까요?”

결핵은 결핵균이 환자의 폐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야 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 환자가 기침을 하지 않는다면 전염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결핵은 환자가 쓰던 물건을 만지거나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옮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결핵균은 환자의 기침을 통해 나온 작은 침방울 속에서 꽤 오래까지 죽지 않고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면 며칠 동안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균 자체가 자외선이나 건조한 상황에 약하기 때문에 결핵환자의 방은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게 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좋습니다.

- “결핵약을 먹고 나서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데요?”

결핵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가운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약제열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찰을 받으셔서 혹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가벼운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자주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상을 덜어주는 다른 약을 복용하거나 바르는 약을 쓰면서 결핵치료는 그대로 계속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의로 약을 사서 복용한다거나 결핵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 “결핵에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은 무엇인가요?”

결핵에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그저 평소에 드시던 대로의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식사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서 결핵약을 잘 복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핵은 몸이 허약해서 생긴다고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소주 등 다양한 보양식을 많이 찾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영양 보충을 위해 개고기, 장어 요리 등, 음식으로 드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개소주나 보약 등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약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용하고 계신 결핵약 자체로도 간에 큰 부담이 되는데 한약제를 함께 복용하면 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건강식품, 보약, 영양제를 먹더라도 치료가 더 잘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대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식단에 맞춰야 합니다,



- “결핵 환자인데 직장이나 학교를 쉬어야 할까요?”

폐결핵의 경우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대개 한 달 이내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력이 없어지게 됩니다(다제 내성 결핵인 경우는 예외). 그러므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대개 전염성의 소실 시기까지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폐결핵이 아닌 림프절 결핵, 결핵성 늑막염, 골관절결핵 등의 폐외결핵 경우는 타인에게 전염력이 없으므로 학교나 직장을 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가족 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결핵은 전염성 질환으로 호흡기결핵인 경우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같이 동거하는 가족은 결핵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단순히 감염된 상태라도 발병 위험이 높고, 발병할 경우 결핵성 뇌막염과 같은 치명적인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17세 소아청소년도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반드시 치료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잠복결핵감염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이소니아지드’라는 항결핵제를 9개월 복용하게 되며, 잠복결핵감염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흉부 흉부 X선사진을 촬영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집단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후 결핵발병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치료를 합니다.

- “균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약을 먹어야 하나요?”

증상과 방사선 검사에서 폐결핵이 강력히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가래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결핵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핵균이 나오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투약과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 “다른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핵 약제와 다른 약제의 사용은 결핵 약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 결핵 약제에 의해서 피임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 외 스테로이드제, 항경련제, 기관지 확장제, 항응고제, 경구용, 혈당강화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복용하면 초기에 균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그 만큼 전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침, 재채기, 웃을 때는 입을 휴지로 가리고 하고, 배출된 객담은 1회용 객담용기에 받아 소각해 버립니다. 또한 사람이 자주 모이는 곳, 밀폐된 공간 등에서는 전염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장소는 피하여야 합니다. (단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객담에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으며 기침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전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자주 환기시켜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 “어떻게 하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나요?”

결핵은 감염된 사람 중에서 발병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염성 환자를 일찍 발견, 치료하여 전염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기침이 2-3주 이상 계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예방접종(비시지)은 결핵균에 감염되기 전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여 결핵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줌으로써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발병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주로 소아결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시지는 약독화 시킨 우형결핵균으로 결핵에 대한 상당한 예방력을 키워주는 백신입니다. 비시지는 제대로 접종되면 접종부위에 조그만 반흔이 남게 됩니다. 영유아 및 소아에서의 결핵성 수막염이나 속립성 결핵 같은 치명적인 결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시지 접종을 권하고 있으며 출생 후 가능하면 빨리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교육자료4\_ 기침, 객담 배출시 대처 및 관리방법

결핵에 의한 기침은 치료를 시작하면 곧 호전되어 1~2개월 이내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병변이 심하거나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기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수도 있다. 기침이 지속된다고 하여 치료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핵은 전염성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 손수건 등으로 막도록 한다.
- 티슈 등이 없을 때는 손으로 막지 말고 옷소매에 기침, 재채기를 하도록 한다.
- 사용한 티슈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 ♣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손을 비누로 씻거나,
-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액으로 씻는다.

### ♣ 기침이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 타인을 보호하도록 한다.

- 흡연자는 금연하도록 한다.

### ♣ 객담도 치료를 하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병증으로 기관지확장증이 있으면 계속 객담이 나오기도 한다.

- 배출되는 객담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리도록 한다.
- 객담이 잘 배출되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한다.

※ 환자의 전염 기간은 유효한 항결핵제로 치료시작하면 급격히 감소하므로 동거 가족과 별거하거나 별도로 식사할 필요는 없다. 초치료인 경우 균음전이 될 때 까지는 타인의 방문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교육자료5\_ 기침 예절



재채기나 기침이 나올 때에는 깨끗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휴지가 없을 경우 입이나 코를 손으로 가리지 말고 옷 소매부분으로 가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후 약 20초 동안 따뜻한 물로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어주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청결제로 씻어줍니다.

## ▶ 교육자료6\_ 객혈 시 대처 및 관리

객혈 시 먼저 위장관에서 나오는 토혈과 구분해야 한다. 토혈인 경우에는 검붉은 색이고 흔히 음식물과 혼합되어 있으며 pH는 산성이다. 객혈은 선홍색이고 거품이 있는 객담과 혼합되고 pH는 알칼리성이다. 출혈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검붉은 색으로 객담과 같이 나오기도 한다.

객혈을 하게 되면 환자는 먼저 병이 악화된 것이 아닌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객혈과 병의 진행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향후 치료도중에도 발생하기도 하며,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과 상관없이 잔존 폐병변에서 객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한다.

- ♣ 객혈은 결핵 병변 내, 특히 공동 내 혈관이 노출되거나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해 혹은 합병증으로 진균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병이 심하더라도 객혈이 없거나 경증이더라도 병변 내 혈관이 터지면 객혈을 하게 된다.
  - 아스피린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등은 출혈을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 ♣ 대량 객혈이 아닌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지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객혈 시 나오는 피는 참지 말고 뱉어내도록 한다.
- ♣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느 부위에서 출혈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때로는 느끼기도 한다. 엑스선 사진상 병변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면, 대부분은 상부 폐야 부위인 경우
  - 병변 폐를 아래로 하는 측와위 자세를 취하거나 병변에 해당하는 가슴 부위에 수건 등으로 둘러싼 얼음찜질을 권하여 좀 더 빨리 지혈이 되도록 한다.
- ♣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진료 담당의에게 진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지혈제 등이 포함된 처방을 받도록 한다.
  - 대량 객혈은 하루 100-600ml 이상 나오는 경우이다.
- ♣ 대량 객혈 시에는 질식에 의한 사망위험이 높다. 따라서 종합병원 혹은 치료받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도록 권한다.
  - 이송되는 동안 혹은 집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출혈하지 않는 폐로 피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출혈하는 폐(알 수 있는 경우)를 밑으로 한 측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환자는 안정을 취하고 기침을 조금 억제할 수 있으면 지혈에 도움이 된다. 출혈하는 피는 참지 말고 뱉어내도록 한다. 따라서 출혈에 의해서 기침이 나올 경우에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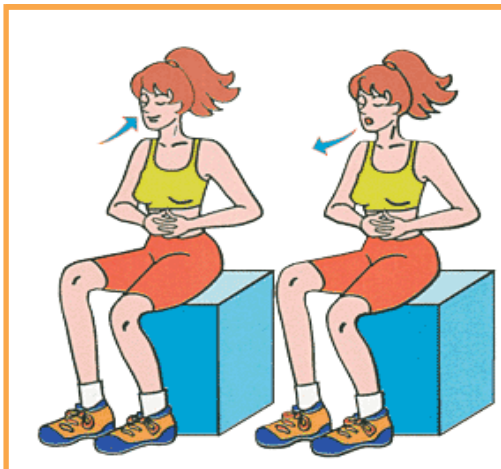
▶ 교육자료7\_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의 호흡법 지도

결핵으로 폐실질의 손상이 심하거나 기도 폐색이 있는 경우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치료 후 일부 병변이 회복되면 호흡곤란도 호전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계속 지속되기도 한다.  
기관지확장제, 산소 투여 등은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정확한 횡경막 호흡법을 알면 도움이 된다. 횡경막 호흡법은 횡경막과 늑간근육을 사용하여 호흡하는 것으로 숨을 마시면 횡경막이 아래로 향하면서 상복부가 팽창하고 흉곽도 넓어지게 된다.

♣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횡경막 호흡법을 가르쳐주도록 한다.

-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손바닥을 대고 몇 번 자연스럽게 숨을 쉬도록 하면서 지켜본다.
- 몇 번 숨을 쉬 후 호기(呼氣) 마지막 부분에서 손바닥으로 배를 누르면서, 환자로 하여금 손바닥을 밀도록 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도록 한다.
- 코로 숨을 들이 마시고 입으로 내뿜는다.
- 몇 번 실습한 후 손바닥을 떼고 횡경막 호흡을 하도록 한다.
- 환자는 긴장을 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상기 호흡법이 익숙해지면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도록 한다.

♣ 일반 호흡법은 숨을 들이마셔서 가슴이 팽창되지만 횡경막호흡법에서는 횡경막과 흉곽을 팽창함으로써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는 기분으로 호흡한다.



▶ 교육자료8\_ 금연 / 절주 방법

■ 금연

1. 흡연의 유해성

- 흡연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비흡연 고혈압 환자보다 흡연 고혈압 환자가 약 50-60%가 높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악성 고혈압의 유병율이 5배, 뇌졸중이 10배, 뇌출혈도 4배나 더욱 잘 생긴다.
- 담배의 성분인 니코틴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압을 상승시킨다.
- 또한 계속적 흡연은 항고혈압제 치료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를 감소시키며 흡연 시 일산화탄소가 폐로 들어가서 혈중 산소이용률을 저하시킨다.

(1) 담배의 유해 기전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압을 상승시킨다. 또한 계속적 흡연은 항고혈압제 치료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를 감소시키며, 흡연 시 일산화탄소가 폐로 들어가서 혈중 산소이용률을 저하시킨다.

(2) 금연 시작은 늦지 않았다!

흔히 담배를 오래 동안 피워온 사람들은 이미 많은 해를 입었기 때문에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금연 1년이 지나면 전반적인 심장발작의 위험성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15년이 지나면 위험률은 흡연을 한 적이 없는 같은 연령의 사람들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금연은 언제 시작하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금연 지침

- 일시에 끊는 방법을 택한다. 양을 줄이는 방법은 실패한다. 마음먹은 날부터 5일간은 절대 피우지 않는다.
- 의지력을 굳게 한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나는 금연하기로 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암송한다.
- 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 운동을 한다.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한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지나치게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혈압을 갑자기 올리므로 위험하다).
- 담배 생각이 날 때 심호흡을 되풀이한다.
-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신다.
- 금연을 시작한 날로부터 5일간은 술과 커피를 금한다.
- 음식을 고기보다는 야채로 먹는다.
- 식사 후에는 그 자리를 즉시 옮긴다.
- 과로, 수면부족, 과식을 피한다.
-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담배연기가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
-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껌이나 은단, 박하사탕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이 5일간을 지키면 일차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것이고, 그 후 3개월만 넘기면 자연히 담배와 멀어지게 된다.

### 3. 수십 년 습관으로 굳어져 너무 끊기가 힘든 경우에는 협상된 방법 이용

-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이 적은 담배를 사용한다.
-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제품(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 이용 빈도를 점차 줄여 나간다. : 실제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 담배를 반만 피우고 버린다.
- 담배연기 흡입횟수를 줄인다.
- 담배 대신 안전한 대용물을 이용한다. (예 : 은단, 박하사탕, 껌)

위에 제시된 방법 중에서 과거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거나,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연 계획을 세운다.

금연계획을 세워서 계약서를 쓰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발표한다.

## ■ 절 주

### 1. 음주의 유해성과 금주의 효과

정기적으로 다량의 알코올 섭취가 다양한 인종 남녀 모두에게서 혈압을 높이는 것이 증명되었고, 음주 습관이 있는 인종에게서 고혈압의 유병율은 확연히 높다. 또한 알코올은 칼로리 섭취를 증가시켜 체중이 증가하므로 1-4주 이상동안 알코올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진다. 평소 알코올 섭취량의 80-85 %를 줄이는 것이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압/이완기압을 5.0/3.0 mmHg 감소시키고, 정상인에게서는 3.8/1.4 mmHg를 감소시킨다. 한 무작위 요인연구는 알코올 섭취만 제한하더라도 4.8/3.3 mmHg 혈압을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코올과 열량섭취제한을 함께 할 경우 혈압을 10.2/7.5 mmHg 낮추고 체중이 10kg 감소한다.

다량의 알코올은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항고혈압제 치료에 저항을 초래하여 똑같은 용량의 약을 복용하여도 비음주자에 비해 혈압강하의 효과가 낮다. 기온변화가 심한 계절(특히, 겨울)에 과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음주는 인체의 체온조절능력을 저하시키고 인지기능을 마비시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2. 바른 음주습관 지침

- 저 칼로리 술을 마신다.
-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적게 마시며 독한 술은 피한다.
- 술을 구입 시 조금만 구입한다.
- 만성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인과 상담한다.
-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총 섭취 열량의 15% 이상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 술의 열량

(1컵 : 200cc, 1잔 : 50cc)

종류	어림치	열량	종류	어림치	열량
소주	1잔	90	브랜디, 위스키	1잔	140
맥주	1컵	100	드라이진	1잔	130
막걸리	1컵	100	포도주(백)	1잔	50
청주	1잔	65	포도주(적)	1잔	40
삼페인	1잔	20	단포도주	1잔	60

3. 금주 실천법

- 주로 술을 같이 마시던 사람과 새로운 취미활동을 시작한다. 정적인 것보 다는 축구, 볼링 등 스포츠가 좋다.
- 주로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을 마치면 곧바로 귀가하여 정원, 텃밭 가꾸기, 가축 기르기, 집안 일 돕기 등도 도움이 된다.
- 주기적으로 금주의 의지를 다지고, 음주가 심한 경우라면 AA 모임에 참가하여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 간호사가 소개를 해주고 비밀을 지켜준다.

## ▶ 교육자료9\_ 결핵환자에 흔한 동반질환 관리

### ■ 고혈압 관리

고혈압 관리의 최대 목표는 적정 혈압을 유지함으로써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장기의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복용만큼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 내 압력의 증가와 동맥 경화 촉진 작용으로 뇌, 심장, 신장, 말초 혈관, 눈 등 여러 장기에 손상을 야기합니다.

고혈압을 치료 할 때에는 혈압 상승의 정도뿐만 아니라 흡연, 비만, 당뇨, 고지혈증, 신장 질환 등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지 또 표적 장기 손상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면 뇌졸중, 심장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1. 고혈압 치료법

### 1) 약물 치료

생활 요법으로 혈압 조절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약물로 혈압을 낮추어야 합니다.

혈압은 140/90mmHg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과 용량, 그리고 부작용을 의사에게 물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약물을 복용할 때 주의점

- 주치의의 처방대로 복용시간과 횟수, 용량을 정확하게 복용합니다.
- 자주 혈압을 측정하여 약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 먹고 있는 다른 약이나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은 주치의에게 가져가서 알려줍니다.

### 2) 식사 요법

- 식사에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여 칼로리를 줄입니다.
- 전곡식품과 생선, 가금류(닭고기 등)와 견과류 섭취를 증가시키고, 육류와 단순당의 섭취를 줄입니다.
- 과일과 채소를 통해 칼륨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 우유 섭취를 통해 칼슘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육류를 섭취합니다.
-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 외식을 되도록 줄입니다. 이러한 식사를 통해 체중 조절과 함께 단백질과 섬유질 및 마그네슘, 칼륨, 칼슘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식을 지속하면 8-14mmHg 정도의 혈압 강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저염식도 식사요법에서 중요합니다.

#### ♣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

- 음식을 요리할 때 음식의 맛을 소금대신 후추나 향신료로 합니다.
  - 식탁에서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 국, 찌개, 라면 등 국물은 되도록 마시지 않습니다.
  -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육류를 섭취합니다.
  -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 외식을 되도록 줄입니다.
- \* 과식에 의한 열량 초과도 비만을 일으키며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 ♣ 에너지 초과를 막는 식사법

-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 음식을 천천히 먹습니다.
- 간식은 먹지 않습니다.

#### \* 카페인 함유 음료

카페인 함유 기호 식품은 처음에는 약간 혈압을 상승시키나 내성이 빨리되어 혈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차 등의 기호 식품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 3) 운동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체중의 감소와 무관하게 5~7mmHg 정도 혈압이 감소합니다.

운동 중의 심박수가 분당 110~120회 정도가 되도록 하거나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30~60분간 하며, 1주일에 3~5회 정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빨리 걷기, 조깅,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 줄넘기, 체조 등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 4) 음주량 조절

각 술 종류에 맞는 잔으로 1일 여자 1잔, 남자 2잔 정도의 소량의 적정 음주는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음을 하면 초기에는 혈관 확장에 의해 혈압이 감소하나 각성 시 혈압이 상승되고 맥박수가 증가되어 심혈관계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 5) 금연

금연은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수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 담배를 피우면 15~30분간 혈압이 상승합니다.

### 6) 체중 감량

비만 중 남성형 비만(상체 비만)은 고혈압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을 1kg 감량하면 수축기 혈압/확장기 혈압은 1.6/1.3mmHg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트레칭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집거장 정도는 걷는다



계단을 이용한다

###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법

## ■ 당뇨환자 관리

### 1. 당뇨병 예방 및 조기치료

당뇨병 치료를 게을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만 한다면 당뇨병 예방은 물론이려니와,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결과로 비당뇨인과 동일한 수명과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역설적으로 비당뇨인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나은 생활의 질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치료법의 핵심은 생활습관의 개선이다.

#### 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효과

핀란드 당뇨병 예방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당뇨병 발병이 대조군에 비하여 58% 감소하였다. 생활조절은 철저한 식사교육과 하루에 30분 이상 중등도의 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3.2년 후에 치료군은 연간 3%에서, 대조군은 연간 6%에서 당뇨병이 발생하였다.

미국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는 내당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7%이상의 체중감량과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시행한 후 3년 후에 당뇨병의 발병을 비교하였다.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하여 대조군에 비하여 58% 감소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 서는 당뇨병 치료약인 메포르민을 복용한 군에서 역시 31%의 당뇨병 발병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생활습관 개선군이 약제 투여군에 비하여 오히려 더 우수한 당뇨병 예방효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나. 생활습관 개선의 구체적인 목표

비만한 사람에서 체중감량은 당뇨병에 관련된 모든 인자들(혈당, 혈압, 이상지혈증 등)을 개선시킨다. 일 년 동안에 7~10%의 체중감소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더 이상의 체중감량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간에 감량된 체중은 쉽게 체중 증가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체중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따라서 일단 체중감량이 생기면 최소한 유지할 수는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최적의 식이요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저 탄수화물 또는 극도로 제한된 초저탄수화물(하루 130그램 이하)식사 등이 있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권장되지 않는다.

염분제한, 절주, 칼륨과 칼슘의 충분한 섭취, 과일과 채소류의 충분한 섭취, 저지방 낙농제품은 혈압개선 효과가 있다.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과 트랜스불포화 지방을 제한하고 불포화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추천되고 있다. 항산화제,비타민B 또는 오메가-3 같은 것들은 아직은 일치된 결론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는 않는다. 최적의 식사를 위한 영양소의 조성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다. 전체 식사량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열량 이상은 안된다.

포화지방을 포함한 고지방식은 안된다. 하나의 특수한 영양성분의 효과에 대해서 과신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여러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체중감소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뚜렷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주에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신체활동 또는 일주에 최소 90분의 고강도 유산소운동이 필요하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일주일 최소한 7시간의 중등도 또는 고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중감량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다. 비록 체중감량이 없어도, 최소한 체중증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운동을 계속한다면, 혈당개선은 물론이려니와 혈압과 이상지혈증과 같은 심혈관합병증의 위험요소들도 좋아진다.

흡연하는 당뇨병 환자는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조기사망을 또한 증가한다. 흡연과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에서의 영향을 따로 분석한 것이 없으나 적어도 일반인에 나타나는 나쁜 영향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당뇨병 환자는 금연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당뇨병 관리에 금연 치료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 다. 당뇨병 환자의 조절 기준 (미국당뇨병학회, 2008)

혈당관리	
당화혈색소(A1C)	<7.0%
식사 전 혈당	90-130 mg/dl
식후혈당(최고값)	<180 mg/dl
혈압	<130/80 mmHg
혈청지질	
LDL	<100 mg/dl
중성지방	<150 mg/dl
HDL	>40 mg/dl

#### 라. 합병증 관리

- 급성 합병증 : 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혈당성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
- 만성 합병증
  - 대혈관 질환 :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 소혈관 질환 :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염, 당뇨병성신증, 발에 생기는 병변 (괴사-DM foot)

#### 마. 결론

국가와 국민이 부유해지면서 생기는 부적절한 음식문화와 덜 움직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당뇨병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의 발생현황이 이를 말해준다. 당뇨병은 환자의 증가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당뇨병은 대부분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발병 및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 가능하다는 질환이다. 필요한 경우에 약물치료까지 병행한다면,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동안 합병증없이 비당뇨인 못지않은 건강수명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생활습관의 개선은 당뇨병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경우에 따라서는 악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다.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는 물론, 가족과 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진 사이에 적절하면서 공통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약제 선택(인슐린, 경구 혈당강하제, 고혈압 치료제, 혈청 지방 및 지질 강하제, 그 외 다른 약제)은 당뇨병의 종류, 당뇨병 상태, 합병증 및 동반 질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개인의 식사요법 설정, 적절한 운동요법 설정, 자가 치료를 위한 환자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혈당의 자가 측정 및 소변 중 케톤 검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재방문 시기와 계속 관찰시 방문 횟수 등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교육자료10\_ 중단자 관리 및 가정 방문 / 사회복지 연계

1. 중단자 관리

(1) 목적

규칙적인 진료 및 결핵약 복용으로 결핵치료 완치에 이르도록 함

(2) 접근방법

- ① 진료예정일을 지키지 않거나, 규칙적으로 항결핵약제를 투약하지 않는 대상자는 진료 예정일 3일 후부터 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내원 독려 한다.
- ② 결핵환자 사례관리에 따른 재교육을 실시하고 환자가족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 ③ 거동불능자는 입원을 권유한다.
- ④ 병원과의 거리가 먼 지방의 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투약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 ⑤ 전염성이 있는 균양성 환자인 경우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의거 강제 입원 명령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⑥ 중단한 대상자 중 전염성환자는 별도로 계속 추구관리 하도록 한다.

2. 가정방문

(1) 목적

결핵환자 사례관리대상자가 해당병원 내원 불능자이거나 불규칙적인 진료와 투약 불이행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결핵을 완치 하도록 함

(2) 원칙

- ① 결핵환자 사례관리 대상자 중 가정방문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한다.
- ② 가정방문 대상선정은 일주일 이상 내원하지 않고, 환자사례관리 중 파악된 건강문제의 문제목록이 3가지 이상이 중재되지 않는 대상자를 우선시 한다.
- ③ 가정방문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문할 것임을 알리고 방문 시간을 약속한다.
- ④ 가정방문을 통하여 대상자가 가진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건교육을 통해 결핵치료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킨다.
- ⑤ 거동불능자인 경우 입원을 권유하고 마산, 목포 등 결핵전문병원을 소개한다.
- ⑥ 가정방문이 불가능한 원거리의 대상자는 관할보건소에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연계

(1) 목적

- ① 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연계 제공
- ② 건강문제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결핵을 완치하도록 함

(2) 접근방법

- ① 수급대상자인지 파악한다.
- ②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현황(조직과 기능)을 파악한다.
- ③ 사회복지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문인력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전달 체계의 파악한다.
-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소개한다.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 ○ Contents

○ 주요변경내용	103
○ 1. 개요	104
○ 2. 사업추진체계	105
○ 3. 사업내용	107
● 가. 입원명령 지원	107
● 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16
● 다. 입원명령해제 이후 지원	118
○ 부록. 서식	120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2년	2013년
입원명령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성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호흡기 결핵환자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인 경우</li> <li>•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료한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명령을 실시함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li> <li>•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객담 균 양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li> </ul>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환자가구), 500%미만(부양의무자가구)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환자가구)인 경우</li> </ul>
약제비(환자본인 부담 항결핵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 입원명령 실시 후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1년(입원명령해제환자의 DOT(직접복약확인)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 입원명령 실시 후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최대 2년(입원명령해제 후 복약확인 실시를 통해 지원) · 처방일~1년 : 무조건 지원 · 지원기간 1년 경과 후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처방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때 추가 1년 지원</li> </ul>
입원명령 해제 후 지원(복약확인 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방문 직접복약확인</li> <li>•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마산, 목포, 서북병원 입원환자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li> <li>•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일부 대상자에 한함</li> <li>• 디지털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일부 대상자에 한함</li> </ul>



## 개요

### 가. 사업 목적

-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 및 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등 격리를 통한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방지 및 치료성공률 제고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 나. 사업 목표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해 85%까지 입원명령 실시
- 입원명령을 통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균 음전 시까지 반드시 100% 격리 조치하여 철저하게 치료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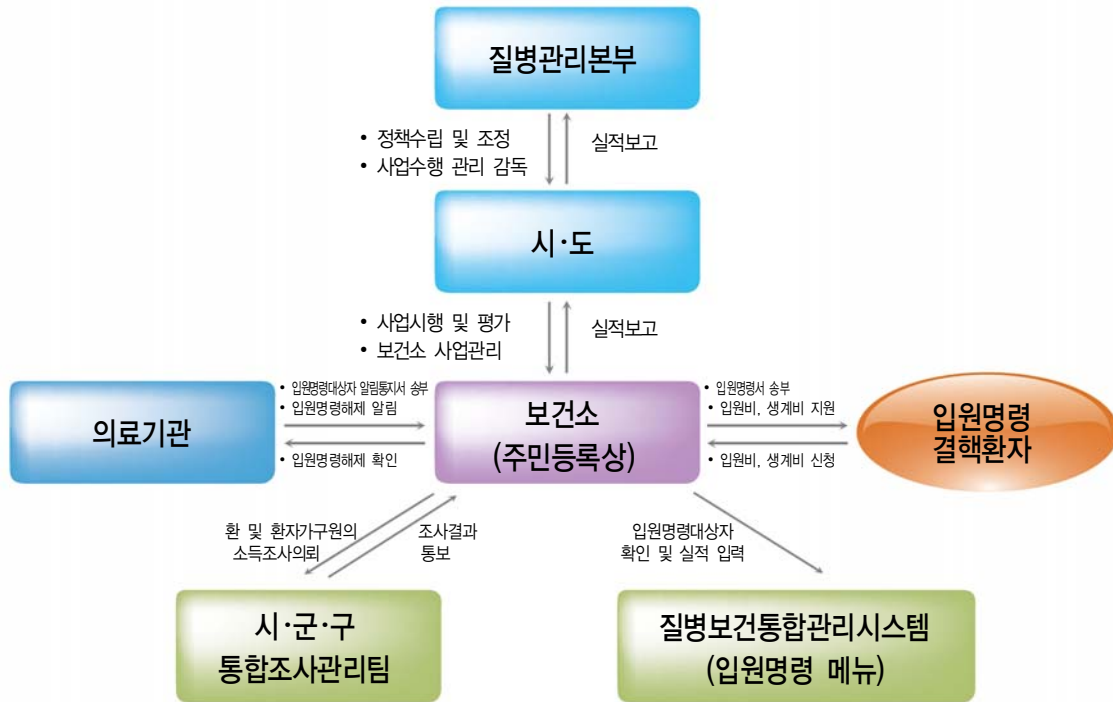
### 다. 추진경과

2006. 09	결핵퇴치 2030계획 수립 -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순응도 제고(약제비 지원)
2008. 03. 19	결핵퇴치 2030 Revision 수립('08.3.19) -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치료 비순응자 수용 격리 치료) - 다제내성결핵환자 격리치료 지정전문병원 운영 및 진료비 지원
2010. 01. 1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10.1.18) - 감염병환자의 입원통지
2010. 01. 25	결핵예방법 개정('10.1.25) - 입원명령대상,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결핵 치료 비용 지원
2010. 08. 23	결핵조기퇴치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2010. 12. 31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예산 확보
2011. 04. 01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시행
2011. 04. 19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관련 고시 제정 - 부양가족생활보호조치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2011. 11	입원명령환자의 비급여 지원 비용 추가 지원 - 입원명령·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의 '비급여 2차 항결핵제 추가지원' 시행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상급병실차액료 추가 지원
2012. 04	입원명령해제환자의 비급여 항결핵제 직접복약확인 시행
2012. 10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관련 고시 개정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급 기준 완화(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삭제)
2012. 12	입원명령환자의 비급여 항결핵제 지원 기간 확대 계획 수립(최대1년→최대 2년)

# 02

## 사업추진체계

### 가. 사업수행체계도



### 나. 기관별 역할

#### ●● 질병관리본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 예산편성 및 기술 지원
- 사업 평가 모니터링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시·도

- 시·군·구의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홍보
- 시·군·구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예산 집행 결과 보고 포함)
-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 시·군·구 기술 지원

## ●● 시·군·구

-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 입원명령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해제 이후 지원

## ●● 의료기관

- 입원명령 대상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 입원명령환자 치료 및 관리

##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보건소에서 요청한 입원명령결핵환자에 관한(본인 및 환자가구) 소득 조회 및 결과 알림



## 사업내용

### 가. 입원명령 지원

####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 진단기준 : 신속내성검사 또는 약제감수성검사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객담 균 양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

#### 입원명령 실시에 필요한 객담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

- 객담도말검사(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
- 객담배양검사(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
  - ※ 단, 항결핵제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객담배양검사를 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까지 인정함**
  - \* 객담검사는 객담검사 시행일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 미성년자녀는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
    -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지원 기간

- 입원명령으로 입원치료한 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해제 시까지

## ●● 지원 범위

### ■ 입원비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500만원 이하(입원비 지원금액 표 참조)
  - 지원 항목
    - 투약 및 조제료
    - 식대
    - 주사료
    - 선택진료비
    - 균 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 제증명료
    - 상급병실 차액료
      - 비급여 지원항목으로 연간지원상한선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급여 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서식 13)를 제출받아 확인 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 입원명령기간동안 병실료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 ✓ 장기입원으로 인해 비급여 연간 지원상한선을 초과하여 상급병실차액료가 발생할 경우

#### 〈입원비 지원 금액〉

구 분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 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주사료, 선택진료비,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전액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 ☞ 만성배균자의 정의

- 다제내성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 환자

###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 금액 : 전액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5군)는 최대 70,000원/일까지 지원
  - 지원 조건 :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치료를 실시한 결핵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로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된 경우
    -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환자
    - 퀴놀론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그 외 아래와 같은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심사 후 지원 대상 결정
      - 지속적인 도말 및 배양에서 양성결과로 인해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
      - 약제 부작용 등으로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는 처방하기 어려운 경우
- \* 결핵진료지침(초판) p48 참고(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지침의 분류기준)

### ■ 간병비

- 지원 대상
  - 치매 환자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sup>2)</sup>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중풍·고령 등으로 해당 보건소장 또는 담당간호사가 거동불편자로 인정한 자
- 지원 금액
  - :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일 단위 지급 가능)
- 지원 절차 : 지원대상자의 제출서류 확인 후 간병비 지급

지원대상자	치매 환자	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중풍·고령 등 기타 환자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진단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체장애1급 등록증 사본</li> <li>■ 뇌병변장애1급 등록증 사본</li> <li>■ 장애진단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우보증서<sup>3)</sup>(서식 8)</li> <li>※ 중풍환자는 병원진단서와 함께 제출</li> </ul>

### ■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보호자 식대 등
- 입원명령 기간 외 소요되는 검사비 및 치료비
  - ※ 의료기관의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 송부일 이전 입원비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입원명령기간 중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검사비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 ※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확인하여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제외하여 지원함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2)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기준

3) 인우보증서 : 사회복지사, 보건소장이 세울 수 있으며, 인우보증인은 2명은 되어야 하고, 인우보증인의 등본 첨부하여야 함(서식 8)

## ●● 의료기관의 역할

### 1) 입원명령대상자 알림

-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입원명령대상자 발생 시 즉시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서식 1)를 작성하여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 입원명령대상자 통보
  - 해당 검사결과지(결핵균 양성 및 억제감수성검사 결과지) 첨부하여 송부
-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제내성결핵'으로 신고된 환자의 객담검사 및 억제감수성 검사 결과를 확인 요청 시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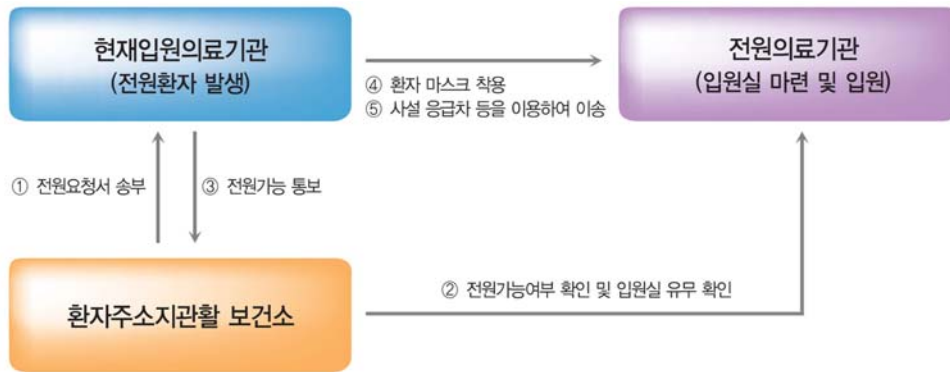
#### ☞ 입원명령환자의 입원 의료기관 선정

- 환자가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에 입원을 원할 경우 해당 병원에 우선 입원조치
  - 단,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입원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입원 가능한 입원실이 있는 타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입원명령 의료기관으로 선정
- 만성배균자
  - 국·공립의료기관에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병상 유무확인 후 입원명령 의료기관으로 선정
    - 1순위 :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 2순위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
  - ※ 입원명령대상자가 타 의료기관에 입원 시 사설 응급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며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

### 2)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치료 및 관리

#### 2-1) 입원명령기간 중 전원 요청

- 입원명령환자가 입원 치료 중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전원요청서(서식 4)를 송부
  - 입원명령환자가 입원명령기간 동안 '만성배균자'로 전환된 경우
  - 그 외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어려운 사유(합병증 및 장기입원 등)가 발생한 경우
- 보건소 결핵담당자로부터 입원명령환자의 전원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 타 의료기관 전원 시 사설 응급차량 이용 가능
    - 전원 및 환자 이송 시 응급차량 사용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입원명령환자의 비급여 연간 지원금액과 별도 지원(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예산 활용)



[입원명령환자 전원 절차]

### 2-2)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지원대상자 심사요청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을 위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 심사 요청
  - ‘지원 범위의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조건 확인(p.108)

#### ☞ 심사방법

- 의료기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약제비 지원대상 심사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주민등록관할보건소는 심사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심사 요청
  - 1차 :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심사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심사
  - 2차 : 결핵 진료 및 치료 소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해당 건에 대해 서면 심사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 후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약제비를 지원함
- ※ 심사 서류
  - 결핵환자 관리표(서식 7) 각 1부 : 입원명령환자의 입원치료 의료기관에서 작성
  - 객담도말/배양/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 각 1부
  - 의사소견서 각 1부 : 치료 경과, 향후 치료 계획 등
  - 심사 요청에 필요한 의무기록사본 각 1부 : 약제에 대한 처방 내역 등
  - 약제부작용과 증상 악화 등과 관련된 검사결과지 또는 타과 협의 진료 복사본 각 1부 : 해당자 한함

### 3) 입원명령해제 알림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균음전 확인 시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입원명령해제알림통지서(서식 6) 송부
  - 입원명령환자의 균 음전된 결핵균 검사결과 및 의사 소견 등 작성

### 〈입원명령해제 기준〉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최소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 및 객담배양검사 1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했을 때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최소한 2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 ☞ 객담검사 실시 기준

- 결핵 치료 중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입원명령 실시 후 객담도말검사와 객담배양검사는 최소 월 1회 이상 시행해야함
  - ： 첫 음성결과 확인 시 최소 8~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 확인함
  - ※ 객담배양검사 : 액체배지·고체배지 결과 모두 인정

## ●●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신청

### ■ 입원비

-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단, 해당 입원비 지급은 입원명령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목적
  - 동 사업이 진료비용수증을 증빙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이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입원비를 신청하도록 함
- 적용대상
  - 입원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 활용 절차
  - 1) 입원명령결핵환자는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사항을 의료기관에 요청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2) 의료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입원비 중 결핵치료 관련 입원비를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선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후 잔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청구(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 3) 보건소는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입원비 지급을 보증

- 신청 장소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입원비는 1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함
    -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환자(보호자)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료기관) 신청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용) 1부</li> <li>▪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1부</li> <li>▪ 입원기간동안의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li> <li>▪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li> <li>▪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li>▪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li> <li>▪ 가족관계증명서<sup>4)</sup> 1부*</li> <li>▪ 주민등록등(초)본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비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li> <li>▪ 입원기간동안의 환자 입원비 영수증 1부</li> <li>▪ 입원기간동안의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li> <li>▪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li> <li>▪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ul>
<p>* 해당자 한함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로 민원인이 제출치 않도록 함</p>		

※ 매월 신청할 경우 동일한 서류는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가능

☞ 신청 구비서류 관련 참고사항

- 입원비지원신청서 1부(서식 9 또는 서식 10)
-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원본 1부(서식 14)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
  - 단,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결핵 치료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를 제출
  - 간이 영수증(수가용)은 인정하지 않음
- 입원기간동안의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1부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 원내 처방내역 확인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의 진료내역 확인
  - ※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으로 반드시 제외

4) 보호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원명령대상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장구

-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
-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
  - 객담 도말/배양 검사결과지
    - 입원 중 중간정산 시 : 입원명령 실시 후 입원치료 중에 검사한 결핵균검사결과지
    - 입원명령 해제 후 정산 시 : 입원명령 해제 기준에 맞는 최종 균음전 검사결과지
  - 약제감수성검사 및 신속내성검사 결과지(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최초 신청 시, 서식 15)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제출 생략
  - 보건소의 사업담당자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출력하여 첨부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 ■ 약제비(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단, 해당 약제비 지급은 입원명령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약제비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약국 및 의료기관

#### ☞ 약제비 지급보증제

- 적용대상
  - 약제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 신청 방법
  - 약국
    -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및 입원의료기관에 입원명령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원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Fax 신청 가능)
  - 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입원비 신청 절차와 동일

- 신청 장소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약제비는 1개월 단위 지원 신청
    -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 가능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환자(보호자) 신청 시	약제비 지급보증제(약국 및 의료기관) 신청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li> <li>▪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li> <li>▪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li> <li>▪ 의사소견서 1부</li> <li>▪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li>▪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li> <li>▪ 가족관계증명서<sup>5)</sup> 1부*</li> <li>▪ 주민등록등(초)본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비 지원신청서(약국 및 의료기관용) 1부</li> <li>▪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li> <li>▪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li> <li>▪ 의사소견서 1부***</li> <li>▪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ul>
<p>* 해당자 한함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로 민원인이 제출치 않도록 함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함(약국 신청 시)</p>		

※ 매월 신청할 경우 동일한 서류는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가능

☞ 신청 구비서류 관련 참고사항

- 약제비지원신청서 1부(서식 11 또는 서식 12)
- 처방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의사소견서 1부
  - ※ 약국 신청 시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첨부
-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
  - 객담 도말/배양 검사결과지
    - 입원 중 신청 시
      - : 입원명령 실시 후 입원치료 중에 검사한 결핵균검사결과지
    - 입원명령해제 후 신청 시
      - : 지원 신청 시점의 최근 1개월 이내 결핵균 검사결과지로 이전 신청 시 사용한 검사결과지 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 약제감수성검사 및 신속내성검사 결과지(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 ※ 약국 신청 시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첨부

5) 보호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원명령대상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장구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최초 신청 시, 서식 75)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제출 생략
  - 보건소의 사업담당자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출력하여 첨부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 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 지원 대상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로(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 \* 환자가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관할보건소로 문의

〈201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 저 생 계 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환자가구(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 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2,690,734원)

-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긴급복지지원사업」·「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생계지원)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지원 기간

- 입원명령으로 입원치료를 한 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해제 시까지

### ●● 지원 범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구 내 입원명령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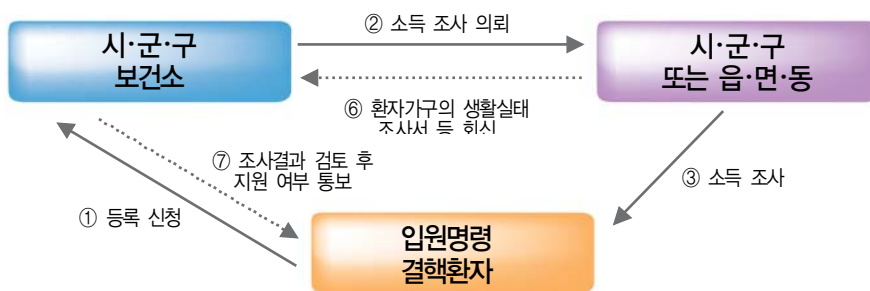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 ※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기준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 (8인 가구 2,202,994원)
- ※ 일 단위 계산 가능(30일 기준)  
 <예시> 입원명령결핵환자의 환자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산출방법(일할계산)  
 · 1인(10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468,453원)/30×10일} 생계비는 156,151원임  
 · 3인(15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1,031,862원)/30×15일} 생계비는 515,931원임  
 · 8인(15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2,202,994원)/30×15일} 생계비는 1,101,497원임

### ●● 지원 절차

- 입원명령환자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소득조사 의뢰 대상자 확인, 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조사 의뢰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보건소로 소득조사결과서 송부
- 보건소는 소득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입원명령환자에게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가능여부 통보
- 보건소는 입원명령환자에게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 지원 신청

#### ■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단, 해당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급은 입원명령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1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
    -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 가능
    -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 문의

## 다. 입원명령해제 이후 지원

### ●● 지원 대상

- 입원명령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지원받아 복용한 입원명령해제환자
  -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등)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함

### ●● 지원 기간

- 입원명령 해제 이후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남은 지원 기간
  -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는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제기간 포함) 지원
    - 처방일~1년 : 무조건 지원
    - 지원기간 1년 경과 후
      -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처방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때 1년 추가 지원

### ●● 지원 범위

-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 조건 :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
  - 지원 금액 : 전액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5군)는 최대 70,000원/일 까지 지원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5천원/일)
  - ※ 기타 다른 복약확인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 복약확인 방법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입원명령해제환자가 보건소로 매일 방문하여 담당 결핵관리요원이 환자의 항결핵제 복용여부를 직접 확인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입원명령해제 후 부작용 및 타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재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동안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환자의 항결핵제 복용 여부 직접 확인

- 디지털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 거동불편자(고령, 노약자 등), 학생, 직장인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함
  - 디지털 복약기 복약확인(Digital DOT, D-DOT)
    - 디지털 복약기를 환자의 가정에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복약기에서 약을 꺼내어 복용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치료받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요원에게 전송하는 간접적인 복약확인 방법
    - 제한 사항 : 환자의 가정에 인터넷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모바일 복약확인(Mobile DOT, M-DOT)
    -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복약확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치료받는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요원에게 전송하는 간접적인 복약확인 방법
    - 제한 사항 : 환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복약확인 절차

###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도록 함

###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입원명령해제 후 부작용 및 타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해당 입원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입원의료기관에서 직접복약확인치료를 실시함  
 ※ 단,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약제비를 제외한 입원비(기타 진료비 포함)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의료기관
  - 환자의 처방 약제 보관 및 관리
    - 단, 입원명령해제환자의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 시
    - 의료기관에서는 퇴원 시점까지의 복용 및 투여한 약을 제외하고 남은 약의 개수를 환자에게 확인시키고,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서식 17)에 환자의 서명을 받음
    - 남은 약은 반드시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 반납
      - ※ 보건소 남은 약제 반납 시 배송 비용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부담(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예산 활용)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직접복약확인 실시
    - 의료기관은 매일 환자의 복약확인 및 주사 항결핵제 투여
    -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을 작성하여 매월(입원치료기간동안)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로 송부(환자, 의료기관 담당자 서명)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 입원명령해제 이후 입원치료기간 동안 직접복약확인 실시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획득
  - 입원 치료 의료기관으로부터 매월(입원치료기간동안)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을 받아 약제비 지급

### ■ 디지털 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도록 함

## 지원 신청

- 입원명령 해제 이후 약제비 지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가. 입원명령 지원' 중 약제비 지원 신청과 동일함



## 〈서식 2〉 입원명령서

입원명령서			
성명		생년월일 (성 별)	. . . (남, 여)
입원장소	(시설명)	입원일	
	(주소)	기 간	~
<p>위 사람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p> <p>※ 만일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10px;">인</span></p>			

※ 기간작성 예시 : 실제 입원일 ~ 균음전 확인 시까지(전염력 소실 판정 시까지)

### 〈서식 3〉 입원명령 안내문(예시)

#### 입원명령결핵환자 안내문

결핵은 공기를 매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결핵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1년 동안 1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는 결핵예방을 위하여 입원을 통한 결핵치료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결핵감염을 예방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입원명령을 받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로부터 **결핵균이 음전될 때까지 일정기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입원치료기간동안 발생하는

##### ○ 입원비 및 약제비

-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 단, 결핵 이외의 타과질환에 대한 입원비 본인부담금 제외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전액지원(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 및 일부 다제내성결핵환자)
  -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 급여의 전액본인부담 항결핵제 및 비보험 항결핵제

##### ○ 부양가족생활보호비(해당자 한함)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 일정 소득이 확인되고
  - 환자가구의 소득수준이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인 경우

를 지원해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입원비 및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_\_\_\_\_보건소 담당자\_\_\_\_\_

전화\_\_\_\_\_

팩스\_\_\_\_\_

- 임원명령 안내문 첨부(입원비,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 -

구분	입원비 지원	약제비 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명령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결핵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명령을 받고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임원명령결핵환자</li> <li>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 및 일부 다제내성결핵환자 (일부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문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명령을 받은 일정 소득 이하 결핵환자 (자세한 지원대상자 기준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문의)</li> </ul>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li> </ul>		
신청장소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li> <li>월 단위로 신청(필요시 분기별 신청가능)</li> </ul>	
신청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기간동안의 진료비 영수증 1부</li> <li>*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li> <li>입원기간동안의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li> <li>입원비지원신청서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제비지원신청서 1부</li> <li>처방약제비영수증 1부</li> <li>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신청서 1부</li> <li>소득 관련 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신고서</li> <li>· 소득 정보 확인 동의서</li> <li>· 소득 확인 서류(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문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li> <li>결핵균검사 결과지 1부(객담도말 및 배양 검사 결과지, 약제감수성 결과지)</li> <li>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li> <li>입금통장사본 1부</li> <li>가족관계증명서① 1부(해당자 한함)</li> <li>주민등록등(초)본 1부</li> </ul>	

6) 보호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임원명령대상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징구

구분	입원비 지원	약제비 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p>지원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구분</td> <td style="width: 20%;">다체내성 전염성홍역기 결핵환자 만성폐렴자</td> <td style="width: 20%;">다체내성결핵이나 호흡기 결핵환자</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급여본인부담금</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지역 지원 (잔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td> </tr> <tr> <td>비급여 연간지원 신청금액</td> <td>연간 500만원</td> <td>연간 300만원</td> <td>연간 100만원</td> </tr> <tr> <td>비급여 지원항목</td> <td colspan="3">투약 및 조제료, 식대, 설탕진료비, 상급병실료, 군용장비를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등 ※ 잔액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td> </tr> </table> <p>※ 단, 상급병실료액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비급여 초 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관할보건 소에서 확인 후 추가 지원함</p>	구분	다체내성 전염성홍역기 결핵환자 만성폐렴자	다체내성결핵이나 호흡기 결핵환자		급여본인부담금	지역 지원 (잔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신청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설탕진료비, 상급병실료, 군용장비를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등 ※ 잔액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p>■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전액 지원</p>	<p>■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금액 (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1인</td> <td>2인</td> <td>3인</td> <td>4인</td> <td>5인</td> <td>6인</td> <td>7인</td> </tr> <tr> <td>468,453</td> <td>797,636</td> <td>1,031,862</td> <td>1,266,088</td> <td>1,500,315</td> <td>1,734,541</td> <td>1,968,768</td> </tr> </table> <p>※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한도 금액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마다 234,226원씩 증가 (8인 가구 2,202,994원) ※ 일 단위 계산 가능(30일 기준) (예시)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환자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산출방법 (일할계산) · 1인(10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468,453원)/30]×10 일 생계비는 156,151원임 · 3인(15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1,031,862원)/30 ×15일] 생계비는 515,931원임 · 8인(15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2,202,994원)/30 ×15일] 생계비는 1,101,497원임</p>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68,453	797,636	1,031,862	1,266,088	1,500,315	1,734,541	1,968,768
구분	다체내성 전염성홍역기 결핵환자 만성폐렴자	다체내성결핵이나 호흡기 결핵환자																															
급여본인부담금	지역 지원 (잔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신청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설탕진료비, 상급병실료, 군용장비를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등 ※ 잔액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68,453	797,636	1,031,862	1,266,088	1,500,315	1,734,541	1,968,768																											
<p>지원 기간</p>	<p>■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실제입원치료를 받은 기간</p>	<p>■ 입원명령 실시 후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 일로부터 최대 2년(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 제기간 포함)까지 ※ 단, 입원명령해제 이후는 환자본인부담 항결 핵제 복용확인 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함(동 시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민 등록관할보건소에 문의)</p>	<p>■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실제입원치료를 받은 기간</p>																														







〈서식 7〉 결핵환자 관리표(표 작성 기준 : 1년간 투약 기록 작성)

이름	년/ 월/ 일 약제시작일	주민번호	입원명령일										약제중단일	중단사유		
약제명	INH															
	RIF															
	EMB															
1군	PZA															
	Rib															
	SM															
	KM															
2군	AMK															
	CPM															
	Mix															
3군	Lix															
	Oix															
	Pto															
4군	PAS															
	Cs															
5군	AUG															
	Lzd															
객담도말검사 (일/결과)																
객담배양검사 (일/결과)																
약제감수성검사 객담채취일																
기 타 사 항																
의료기관명:	병원	확인일자:	년	월	일	작성자:	(Tel:	)	담당의사:	(서명 및 인)						

〈서식 8〉 인우보증서(예시)

**인 우 보 증 서**

본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 보 증 사 항 -

위 \_\_\_\_\_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합니다.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  
 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20\_\_년 월 일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 인우보증서 : 담당간호사, 보건소장, 보건소 결핵담당자가 세울 수 있으며, 인우보증인은 2명은 되어야 하고, 인우보증인의 등본 첨부하여야 함

〈서식 9〉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용)

입원비지원신청서 (환자용)									
□ 신규 □ 기존									
환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Tel : H.P :			
	이메일				정보수신여부	□ 전자메일 □ 휴대폰 □ 수신거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연락처				
의료보장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2종/ □ 특례 중/ □ 차상위 중)					□ 해당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종별		□ 직장 □ 지역				
후원여부	긴급의료비 등 국가지원여부	□ 없음 □ 있음(기관 : _____, 금액 : _____)							
	개인·단체 후원	□ 없음 □ 있음(내용: _____, 금액 : _____)							
	환급금 수령여부	□ 없음 □ 있음(진료기간: _____, 금액 : _____)							
환급·환수 안내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시 동의		동의자 : _____ (서명)			
입원기간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입원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재신청 입원비	총입원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 (B)			
		지원 (A1+C1)	비지원 (A2+C2)	지원(A1)	비지원(A2)				
								지원(C1)	비지원(C2)
위와 같이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_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b>처리 절차</b>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 신청 →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 입원비 지급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2.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3.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상 확인이 어려운 대리인 신청서) 6. 입금통장사본					1. 주민등록등(초)본 ※ 해당 서류는 민원24의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함				

〈서식 10〉 입원비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입원비지원신청서 (의료기관용)								
□ 신규 □ 기존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진단 코드			연락처	Tel : H,P			
	주 소							
신청 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지원 대상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2종/ □ 특례 중/ □ 차상위 중)					□ 해당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종별	□ 직장 □ 지역				
후원여부	긴급의료비 등 국가지원여부	□ 없음 □ 있음(기관 : )		. 금액 : )				
	개인·단체 후원	□ 없음 □ 있음(내용: )		. 금액 : )				
	환급금 수령여부	□ 없음 □ 있음(진료기간: )		. 금액 : )				
환급·환수 안내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입원기간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재신청 입원비	총입원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지원 (A1+C1)	비지원 (A2+C2)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 (B)	지원(C1)	비지원(C2)
				지원(A1)	비지원(A2)			
위와 같이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__년 월 일 신청 의료기관 장 : (직인) <span style="float: right;">_____ 보건소장 귀하</span>								
처리 절차								
입원명령을 실시한 의료기관 지원 신청 →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 입원비 지급								
의료기관 제출 서류								
1.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2.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3.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4. 입금통장사본								

※ 입원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서식 11〉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약제비(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지원신청서					
□ 입원중 □ 해제					
환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주 소				
	이메일			정보수신여부	□ 전자메일 □ 휴대폰 □ 수신거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연락처	
환급·환수 안내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시 동의	동의자 : (서명)
과거력여부	과거결핵치료 □ 유 □ 무				
기저질환여부	<input type="checkbox"/> 규폐증 <input type="checkbox"/> 위·장질환 등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만성신부전증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HIV <input type="checkbox"/> 알콜중독 <input type="checkbox"/> 스테로이드복용 <input type="checkbox"/> 면역억제제복용(TNF-α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입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				
약처방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				
입원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약처방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			처방 의사명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재신청 약제비	원(처방용량 : mg)				
위와 같이 입원명령결핵환자 약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__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p>• 약제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비(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지원신청서 1부</li> <li>·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각 1부</li> <li>· 결핵균검사결과지(지원 신청 시점의 최근 1개월 검사결과지) 1부 : 객담도말(배양)검사 결과지</li> <li>· 의사소견서 1부</li> <li>·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입금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한함)/ 주민등록등(초)본 1부씩</li> </ul>					





〈서식 14〉 입원비 영수증(예시)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 . .부터 . .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③)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 총액 ⑤(①+②+③+④)		
	입원료		환자부담 총액 ⑥(①+④)		
	식대		이미 납부한 금액 ⑦		
	투약 및 조제료		수납금액 (⑥-⑦)	카드	
	주사료			현금영수증	
	마취료			현금	
	처치 및 수술료			합계	
	검사료		현금영수증(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신분확인번호		
	치료재료대				
정액수가(요양병원)					
전액본인부담		현금승인번호			
선택항목	재활 및 물리치료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정신요법료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포괄수가진료비				
계		④			
본인부담금	①	-			
상한액초과금	②	-			
공단부담금	③	-			
요양기관종류	□의원급·보건기관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현금영수증.kr">http://현금영수증.kr</a>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서식 제6호

### 〈서식 1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p>본인은 ( )년 ( )월 ( )일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결핵균검사 및 치료결과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b>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b>로부터 충분히 들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본인의 <b>입원명령결핵환자 관리자료</b>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__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인 : _____(서명 또는 인)                      확인자 기관명 : _____                      성 명 : _____(서명 또는 인)</p>			
<p><b>〈개인정보취급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 등</li> <li>- 입원명령결핵환자 관리정보 : 결핵균검사결과(객담도말, 배양, 약제감수성검사 등) , 기타 검사, 치료결과가 포함된 입원명령결핵환자치료관리현황</li> </ul> </li> <li>• 제공처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li> <li>• 활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의 결핵관련 정보제공과 보건교육·상담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향후 결핵 재발 대비 추구 관리를 위해 활용</li> </ul> </li> <li>• 보관기간 : 반영구</li> <li>• 활용근거 : 결핵예방법 제6조(결핵통계사업),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의 결핵균검사결과 및 입원명령결핵환자 치료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상 비밀준수의 의무, 결핵예방법 상 통계업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기타 상업적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li> </ul> </li> </ul>			

〈서식 16〉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

〈앞면〉

환자 복약확인 관리 대장									
( _____ 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세	성별	남	여			
진단코드									
주소	연락처		Tel : _____ H.P : _____						
	입원명령일	년 월 일	입원명령기간	총 _____ 일					
관련 일자	입원명령해제일	년 월 일	입원명령해제기간	총 _____ 일					
	실제입원기간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내원 복약확인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복약확인 <input type="checkbox"/> 디지털복약기 복약확인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복약확인						
	복약확인 시작일	년 월 일	복약확인유무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관할 <input type="checkbox"/> 실제 거주지관할					
	경구용 항결핵제	약제명	복약확인 실시기관	의료기관*					
처방 약제	주사 항결핵제	약제명	처방 용량	복용 주기 /					
		약제명	처방 용량	투약 주기 /					
중도 복약확인 실시 포기 시 사유									

\* 의료기관에서 복약확인치료를 하는 경우로, 해당 빈칸에 의료기관명을 작성하고 뒷면의 관리대장은 의료기관 DOT 확인증으로 대체함

<뒷면>

(환자명: \_\_\_\_\_) 보건소명: \_\_\_\_\_

일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확인자																															
0월	보건소 담당자																														
	환자																														
0월	보건소 담당자																														
	환자																														
0월																															
0월																															
0월																															

※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은 보건소 결핵담당자 및 입원명령제환자가 해당 일의 서명을 통해 작성함  
 - 보건소 결핵담당자 : 입원명령제환자의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복용을 확인 후 서명함  
 - 입원명령제환자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해당 서식에 서명함



## ○ Contents

○ 주요변경사항	141
○ 1. 개요	142
○ 2. 사업추진체계	143
○ 3. 사업내용	144
● 가. 지원대상	144
● 나. 지원범위	144
○ 4. 사업추진방법	145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145
● 나. 의료비지급	146
○ 부록.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예시	148
○ 2. Q&A	151

##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2012년	2013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신고된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불능 처리 하며, 차후 신고시 소급되어 지급</li> </ul>	2013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내역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심사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심사후 지급)</li> </ul>	



## 개요

### 가. 사업 목적

-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결핵환자와 그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 향상
-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결핵 치료성공의 장애를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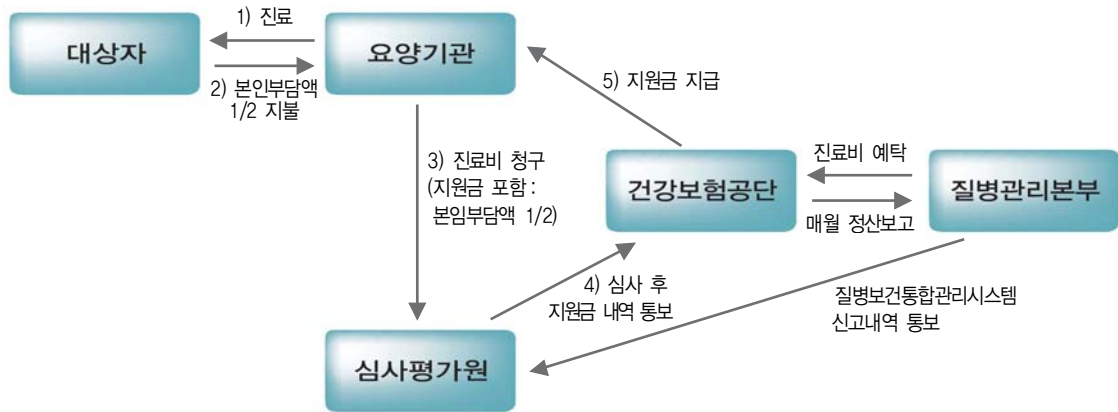
### 나. 사업 목표

-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결핵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를 통하여 결핵 치료중단 예방으로 치료성공률을 높임

### 다 추진경과

2006. 4	결핵퇴치 2030 계획 수립 - 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2008. 4	결핵신환자 약제비지원 시범사업 실시 - 경기도 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약제비 지원
2009. 1	결핵환자 약제비지원 시범사업 확대실시 - 단국대학교의료원 약제비 지원
2011. 1.	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고시 개정
2011.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위탁을 위한 협약 체결
2011. 4. 1~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시행

가. 사업수행체계도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 체계도]

나.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본부

-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발 및 담당자 교육
-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예·결산 관리 및 실적 관리
-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결핵 연구 및 지원대상 질환 선정 등 기타 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예탁금 관리·집행·예산집행 실적관리
- 결핵 환자 자격정보연계, 구축 및 요양기관 제공
- 의료비 지급 및 환수내역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금 통보내역 확인 및 지급
- 의료비지원내역 질병관리본부에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결핵환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여부 확인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지원금 및 진료내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의료기관

- 결핵환자 발생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신고
- 수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회원서비스 「수진자자격확인」에서 결핵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여부(산정특례) 확인 후 처리
- 지원대상자에게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사업내용

### 가.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 지원 제외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외국 국적자<sup>7)</sup>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만,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나. 지원범위

#### ■ 지원 대상 의료비

-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함)의 1/2 지원
  - 지원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함
  - 지원 대상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로,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됨
    - ※ 단, 한방진료 의료비(항결핵제가 없음),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진료 의료비 및 비급여 의료비는 지원제외

#### 7)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 미성년자녀는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
  -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사업추진방법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 ■ 기본방안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만 해당
  - ※ 의료급여, 보훈은 제외
- 대상명세서 :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의 결핵진료 명세서(입원·외래)
  - ※ 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 대상 특정기호 : V206, V246, V231(상해외인 구분자 'L' 인 경우만 해당)
- 대상매체 : 전산청구(정보통신망, 디스켓) 및 서면청구
- 지원대상 의료비 범위 : 요양급여비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액의 1/2만 해당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 지원대상 진료 범위 :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포함) 진료 적용범주와 동일

####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부록2 참고)

-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결핵진료(합병증 포함)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중 결핵진료분(합병증 포함)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명세서 「구분자」기재 :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 ※ 입원 중 동일과목진료의사(외래)의 경우 동일진료의사에게 결핵진료와 동시에 진료받은 타상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 지원금

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 50/100 금액(10원미만 절상)

- 해당 특정기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  
해당 특정기호 : V206, V246, V231(가정간호)
- 해당 등록번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 특정기호(V231)와 함께 구분자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

## 나. 의료비 지급

### ■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간

- 지급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V206, V246)
  - 가정간호를 받은 자(V231)
- 지급기간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날부터 산정특례 자격에서 제외된 날까지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50%)
    - ※ 단, 결핵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산정특례 등록 신청한 경우, 입원 초일부터 지급

### ■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간

- 지급범위
  - 결핵 진료와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50%)
    - ※ 지원 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50%)을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 사소견서(또는 진단서)첨부 시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함
    - ※ 지원 대상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결핵상병) 요양급여료,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됨
- 지급절차
  - 1) 결핵상병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환자를 신고하고 「4. 사업추진방법 → 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신고된 경우 의료비 미지급되며, 차후 신고시 소급되어 지급
  -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 청구한 요양기관에 지원금을 포함한 심사결정금액을 집행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서면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서면청구 요건 및 절차
  - 1) 서면청구 요건
    -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
    - 결핵상병에 대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담당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 2) 서면청구 방법
    - 청구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청구기간 :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 진료비영수증, 합병증 소견서 등을 모두 구비해야 함
- 청구가능자: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
  - 결핵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 진료비영수증 원본(외래인 경우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첨부)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이 있는 외래(입원)영수증 사본으로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내역서 첨부
  -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청구 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 3)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지원대상 진료
  - 결핵 질환으로 인한 치료로 입원 시 동일 진료과목, 외래 시 같은 날 동일의사의 진료분에 한해 지급. 단, 입원 및 외래 시 합병증으로 인한 타과 전과 시에도 지원가능하고 이 경우 합병증임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 시 지원가능
    - ※ 명세서상 주상병이 결핵 상병이어야 함(단, 부상병일 때는 소견서 필요)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결핵상병(산정특례) 및 결핵상병 산정특례 미적용군(합병증과 관련된 약제)의 경우도 합병증치료를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 시 지원가능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00/100)
  - 한방진료 의료비(항결핵제가 없음)
  - 보건기관 진료(무료진료\_보건진료원 제외)

### • 지급절차

- 1) 지원대상자 확인
  - 공단 각 지사에서 서면접수 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
- 2) 지급 요건 확인
  - 결핵상병 또는 동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여부 확인
  - 의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 명세서)의 원본 여부 확인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비급여 항목 등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항목 여부
- 3) 본인부담금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는 지원자격, 지원범위, 사업안내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기준 시점을 준수하여 심사 및 지급의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일괄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영수증 서면 접수시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요됨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공지
    - ※ 서면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전 가지급이 불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완료 후 지급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소요됨

## ■ 지원금 환수 관리

- 요양기관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지급된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환수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예시

### ■ 작성예시

- 예시1 : 고시에서 정한 결핵 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전월누적 청구분			350만원 <sup>주1)</sup>					
현청구분	8,029,920	8,029,920	904,690 <sup>주2)</sup>	250,000 <sup>주3)</sup>	404,690	7,125,230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2013년도 진료분 중 전월까지 누적된 본인부담액

주2)  $[(254,250\text{원}(\text{식대총액}) \times 50\%) + (7,775,670\text{원}(\text{요양급여비용총액 1} - \text{식대총액}) \times 10\%)]$  금액

주3) 500,000원(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times$  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전월누적 청구분			350만원 <sup>주1)</sup>					
현청구분	8,029,920	8,029,920	904,690 <sup>주2)</sup>	250,000 <sup>주3)</sup>	404,690	7,125,230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2013년도 진료분 중 전월까지 누적된 본인부담액

주2)  $[(254,250\text{원}(\text{식대총액}) \times 50\%) + (7,775,670\text{원}(\text{요양급여비용총액 1} - \text{식대총액}) \times 10\%)]$  금액

주3) 500,000원(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times$  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예시2 : 고시에서 정한 결핵 상병으로 가정간호(병원급)를 시행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1	MT002	MT014
31,890	31,890	3,100 <sup>주1)</sup>	1,550 <sup>주2)</sup>	28,790	L <sup>주3)</sup>	V231	등록번호 기재

주1) 31,89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times$  10% 금액

주2) 3,100원(본인일부부담금)  $\times$  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주3) 결핵환자가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에만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상해외인	특정기호	등록번호
31,890	31,890	3,100 <sup>주1)</sup>	1,550 <sup>주2)</sup>	28,790	L <sup>주3)</sup>	V231	등록번호 기재

주1) 31,89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10% 금액  
 주2) 3,1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주3) 결핵환자가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에만 기재

- 예시3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고시에서 정한 결핵 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장애인의 의료비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F	723,520	723,520	20,340 <sup>주1)</sup>	10,170 <sup>주2)</sup>	62,180	641,000	V206	등록번호 기재

주1) 101,700원(기본식대총액)×20% 금액  
 주2) 20,34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장애인의 의료비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F	723,520	723,520	20,340 <sup>주1)</sup>	10,170 <sup>주2)</sup>	62,180	641,000	V206	등록번호 기재

주1) 101,700원(기본식대총액)×20% 금액  
 주2) 20,34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예시4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고시에서 정한 결핵 상병으로 의원 외래진료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장애인의 의료비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F	18,010	18,010	250 <sup>주1)</sup>	130 <sup>주2)</sup>	750	17,010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그밖의 외래진료시 정액본인부담액  
 주2) 25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장애인의료비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F	18,010	18,010	250 <sup>주1)</sup>	130 <sup>주2)</sup>	750	17,010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그밖의 외래진료시 정액본인부담액

주2) 25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예시5 : 약국에서 결핵상병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17,500	17,500	1,700 <sup>주1)</sup>	850 <sup>주2)</sup>	15,800	V206	등록번호 기재

주1) 17,5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10% 금액

주2) 1,7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17,500	17,500	1,700 <sup>주1)</sup>	850 <sup>주2)</sup>	15,800	V206	등록번호 기재

주1) 17,5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10% 금액

주2) 1,7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예시6 : 약국에서 보훈감면환자(60%)에게 결핵상병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6	20,000	20,000	800 <sup>주1)</sup>	400 <sup>주2)</sup>	7,200 <sup>주3)</sup>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2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20,000원×0.6)}×10% 금액

주2) 8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주3) {2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20,000원×0.6)}-800원(본인일부부담금)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6	20,000	20,000	800 <sup>주1)</sup>	400 <sup>주2)</sup>	7,200 <sup>주3)</sup>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2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20,000원×0.6)}×10%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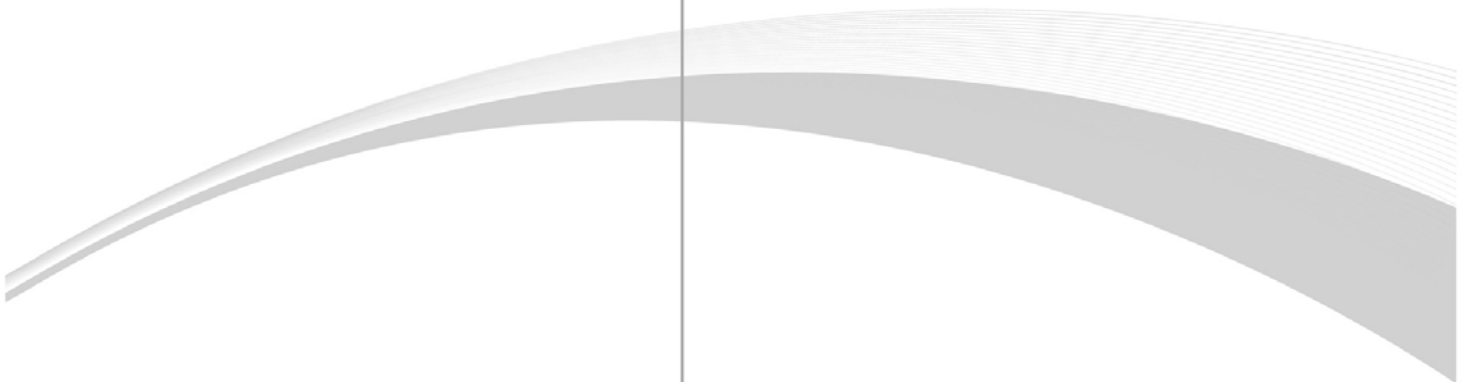
주2) 8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주3) {2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20,000원×0.6)}-800원(본인일부부담금)

연번	질 문	응 답
1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 현행과 동일하게 건보공단 자격조회시 “V” 만 표기
2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 청구시 지급시기는?	- 접수 후 심사전 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사전 지급 (청구매체 불문)
3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 기재방법은?	- 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 × 1/2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4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에게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을 일부 감면해주는 경우 지원금 기재방법은?	- 법정본인부담액의 1/2금액을 먼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서 감면해줄도록 함
5	• 한방이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결핵환자를 진 료한 경우 지원 여부는?	- 해당되지 않음 · 한방 : 표준진료지침에 위배됨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 무료진료에 해당됨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00/100) 지원여부	- 해당되지 않음
6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제외) 가정간호와 결핵 환자 가정간호가 동일일에 함께 발생한 경우 청구방법(월 통합 작성기관)은?	- 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7	• 6세미만 아동(신생아 제외)이 결핵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특정기호를 모두 기재하되, 결핵 상병 관련 특정기호를 우선 기재함 ① V206(또는 V246) : 결핵상병 진료 ② F004 : 6세미만 입원진료
8	• 신생아가 결핵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 법은?	- 특정기호를 모두 기재하되, 신생아 입원진료 관련 특정기 호를 우선 기재함 ① F005 : 신생아 입원진료 ② V206(또는 V246) : 결핵상병 진료
9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지원금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의 지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액을 우선 기재함
10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구분자 : F)로써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액만 발생된 경우 에도 지원 여부	- 지원대상임
11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구분자 : F)가 의원급 외래 진료시 정액본인부담액 250원 (또는 750원)만 발생된 경우에도 지원 여부	- 지원대상임
12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미신고되어 지급 불능 처리된 경우, 신고 후 다시 진료비 청구할 경우 소급하여 진료비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신고 후 다시 진료비 청구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

○ Contents

○ 1. 결핵예방법	153
○ 2. 관련기관 연락처	168





# 결핵예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결핵예방의 날)**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

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투약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인(檢案)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제9조(의료에 관한 지도)**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가정 및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검진)**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핵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출생 후 1개월 미만인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결핵예방접종증명서 및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接客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 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 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모금 등)**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 ②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 경비
6. 제20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 금지)** 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위반한 자

#### 부 칙 (제9963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2.9.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핵환자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등록, 진료 및 복약(服藥) 관리
2. 결핵환자등과 그 가족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교육과 상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핵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제3조(결핵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소에서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원 또는 병원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결핵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입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환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자 본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5조(부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① 법 제16조에서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소득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여 제4항에 따른 소득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 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가족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보호조치의 신청 절차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여부의 판정은 전염성결핵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철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총당방법
-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제12조(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1. 협회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부 칙 <제22667호, 2011. 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별지서식]

입원명령서			
성명		생년월일 (성 별)	. . . (남, 여)
입원장소	(시설명)	입원일	
	(주소)	기 간	~
<p>위 사람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p> <p>※ 만일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p>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15px; margin-left: 100px;">인</div>			

210mm×297mm(일반용지 70g/m<sup>2</sup>)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16] [보건복지부령 제44호, 2011. 2.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인적사항, 진료·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을 진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의 사체를 검안(檢案)하거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실시 시기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결핵검진에 필요한 검사방법, 구체적인 검진대상, 그 밖에 결핵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횡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喀痰)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부 칙 〈제44호, 2011. 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작성요령		결핵질병코드 (※ 기타 결핵의 경우에는 해당 입력코드를 적습니다.)	
입력코드	연계코드	내용	
A15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0		○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폐결핵	
A15.1		○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2		○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3		○ 상세포염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4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A15.5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5.6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	
A15.7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일차 호흡기 결핵	
A15.8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기타 호흡기 결핵	
A15.9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상세포염의 호흡기 결핵	
A16		●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0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음성인 폐결핵	
A16.1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	
A16.2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결핵	
A16.3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A16.4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6.5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결핵성 흉막염	
A16.7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일차 호흡기 결핵	
A16.8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타 호흡기 결핵	
A16.9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포염의 호흡기 결핵	
A17		● 신경계통의 결핵	
A17.0	G01*	○ 수막결핵	
A17.1	G07*	○ 수막결핵중	
A17.8	G05.0* G07* G63.0*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 결핵성 수막염, 결핵성 척수염 · 뇌 및 척수의 결핵증,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결핵성 다발신경병증	
A17.9	G99.8*	○ 상세포염의 신경계통의 결핵	
A18		● 기타 기관의 결핵	
A18.0	H75.0* M01.1* M49.0* M68.0* M90.0*	○ 뼈 및 관절의 결핵 · 결핵성 유방염 · 기타 관절의 결핵성 관절염 · 척추의 결핵 · 결핵성 윤활막염, 결핵성 활주면활막염 · 결핵성 뼈의 괴사, 결핵성 골염, 결핵성 골수염	
A18.1	N29.1* N33.0* N51* N74.0* N74.1* N77.0*	○ 비뇨생식기계통의 결핵 · 신장 및 요관의 결핵 · 방광의 결핵 · 기타 남성 생식기관의 결핵 · 자궁경부의 결핵 · 결핵성 여성 골반 염증성 질환, 결핵성 자궁내막염, 결핵성 난소염 및 난관염 · 결핵에서의 위음의 경우	
A18.2		○ 결핵성 말초 림프관염	
A18.3	K67.3*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 결핵성 복막염 · 결핵성 장염, 췌(대·소)의 결핵, 황문 및 직장 결핵, 후복막 결핵	
A18.4	H03.1*	○ 피부 및 피하조직의 결핵 · 결핵에서의 눈꺼풀 침범	
A18.5	H19.0* H19.2* H22.0* H32.0*	○ 눈의 결핵 · 결핵성 상공막염 · 결핵성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간질성) · 결핵성 홍채염 · 결핵성 맥락막염	
A18.6	H67.0*	○ 귀의 결핵 · 결핵성 중이염	
A18.7	E35.1*	○ 부신의 결핵 · 결핵성 애디슨 병	
A18.8	E35.0* I32.0* I39.* I41.0* I68.1* K23.0*	○ 기타 명시된 기관의 결핵 · 갑상선의 결핵 · 심낭막의 결핵 · 심내막의 결핵 · 심근의 결핵 · 결핵성 대뇌동맥염 · 식도의 결핵	
A19		● 종발 결핵	
A19.0		○ 하나로 명시된 부위의 급성 종발 결핵	
A19.1		○ 여러 부위의 급성 종발 결핵	
A19.2		○ 상세포염의 급성 종발 결핵	
A19.8		○ 기타 종발 결핵	
A19.9		○ 상세포염의 종발 결핵	
B20.0		● 결핵을 유발한 HIV병	
B90		● 결핵의 후유증	
J65		● 결핵과 연관된 친매종	
O98.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결핵	
P37.0		● 선천 결핵	
U88.0		● 다약제내성 결핵	
U88.1		●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 신고범위, 진단기준, 신고기한 및 법적 근거]**  
 가. 신고범위 : 환자(병원체 확인), 의사환자(병원체 미확인)  
 나. 진단기준  
 1) 환자: 결핵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가)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인 확인된 사람  
 나)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인 확인된 사람  
 2) 의사환자: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신고기한: 지체 없이 신고  
 라.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승인번호 제11756호

**[2. 환자 구분]**  
 ① 신환자: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② 재발자: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③ 초치료 실패자: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 균양성인 경우 또는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④ 중단 후 재등락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인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⑤ 전입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장소를 옮겨 내소·내원한 환자  
 ⑥ 만성배균자: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인 환자  
 ⑦ 기타 환자: ① ~ ⑥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

**[3. 신고요령]**  
 ① 제1호나목에 따른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② 제2호에 따른 "환자 구분"이 동일한 환자인 경우에는 한 번만 신고합니다. 단, 환자 구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환자구분에 따라 재신고합니다.  
 ③ 질병코드는 보험청구 시 사용하는 표준 질병코드를 적습니다. (내성결핵인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추가로 표시합니다)  
 ④ 기타 결핵의 경우 반드시 해당 입력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4. 항결핵약제 목록]**

약제명	표기	약제명	표기
isoniazid	H	levofloxacin	Lfx
rifampicin	R	moxifloxacin	Mfx
ethambutol	E	ofloxacin	Ofx
pyrazinamide	Z	protionamide	Pto
rifabutin	Rfb	cycloserine	Cs
kanamycin	Km	p-aminosalicylic acid	PAS
amikacin	Amk	Linezolid	Lzd
streptomycin	S	clarithromycin	Clr

**[참 조]**  
 위 내용은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 시·도

### ●● 연락처

No.	지역	담당과	사무실전화	사무실팩스
1	서울	보건정책담당관	02-2133-7525	02-2133-0724
2	부산	보건위생과	051-888-2852	051-888-2809
3	대구	보건정책과	053-803-6281	053-803-4069
4	인천	보건정책과	032-440-2747	032-440-8657
5	광주	건강정책과	062-613-3332	062-613-3329
6	대전	보건정책과	042-270-4852	042-600-2539
7	울산	보건위생과	052-229-3562	052-229-3519
8	경기	보건정책과	031-8008-4382 031-850-2764	031-8008-2429 031-850-2779
9	강원	보건정책과	033-249-2671	033-249-4038
10	충북	보건정책과	043-220-3144	043-220-3139
11	충남	보건행정과	042-251-2423	042-251-2429
12	전북	보건의료과	063-280-4692	063-280-2429
13	세종시	건강증진과	044-301-2145	044-211-5739
14	전남	보건한방과	061-286-6062	061-286-4780
15	경북	보건정책과	053-950-2422	053-950-2799
16	경남	보건행정과	055-211-4963	055-211-4959
17	제주	보건위생과	064-710-2938	064-710-2919

## 다. 민간단체

### ●● 연락처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 02-6929-3277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 02-6326-3825